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CONTENTS

Part 01

자치행정 분야

1.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 06
2.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운영
| 경기도 화성시의회 | 14
3.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 경기도의회 | 17

Part 02

지역경제 분야

1. 강원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
| 강원도의회 | 28
2.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 3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 40

Part 03

사회·복지·환경 분야

1.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 「경상남도 청년 7조례」
| 경상남도의회 | 50
2.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의회 | 60
3. 조례제정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 충청남도의회 | 65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의회 | 68
5. 농어촌지역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 전라남도의회 | 76

Part 04

교육·문화·생활 분야

1.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
| 전라북도의회 | 84

Part 05

지방의회 혁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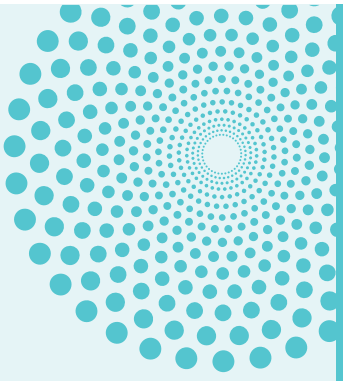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 서울특별시의회 | 96
2.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의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102
3. 청주시 의정활동 누구나·언제나 OK !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118
4. 의정활동 全과정 전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서울시의회” 구현
| 서울특별시의회 | 122
5. 『정책소통 페스티벌』 상설화
| 인천광역시의회 | 135
6.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145

Part 01

자치행정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

2.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운영 | 경기도 화성시의회 |

3.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 경기도의회 |

01 장려상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분 야 자치행정 분야
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추진배경

- 청소년 정책 과정 수립 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부족
- 대화의 장 부재로 인한 수혜대상자의 참여 부족

추진내용

-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
-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20.3.)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 구내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20.6.)
-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운영(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추진성과

- 청소년 정책에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 청소년 대상 의견수렴, 관련 행사 추진

  * 청소년 토크콘서트 '청소년 그대로!'('20.7.),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20.10.)

참고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정책수립 거버넌스

■ 청소년 토크콘서트 '청소년 그대로!'

- 일　시 : 2020. 7. 29(목) 16:00
- 장　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층 강당
- 주　최 : 대구광역시 남구/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　용 : 청소년 발표 및 객석과 소통 시간 등



■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

- 일　시 : 2020. 10. 21(수) 16:00
- 장　소 : 지역공연예술장 '꿈꾸는 씨어터'　※ 유튜브 및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동시 상영
- 내　용 : 청소년 공연, 토크콘서트 등
-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 남구/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청소년 프리존 설치·운영

- 장　소 : 대구교대역 1호선 대합실
- 내　용 : 청소년 댄스 공간 및 공연 등



※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위촉대상 : 관내 주민등록, 학교재학, 사업장 근무 청소년 27명
- 구성목적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및 의견수렴
- 운　　영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구시 주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대상 수상



참고 2 언론보도

대구 남구의회, 18일 청소년정책 수립 공청회

등록 2020-01-17 16:26:32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시 남구청·남구의회 전경. 2020.01.17. (사진=대구시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대구 남구청, 대구 첫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앞둬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요청으로 지역 최초 입법화

서울 초·중·고 6곳, 스트레스 30% 낮춘 모범 사례 토대

지난 3월 조례 시행, 내년 상반기 예산 확보 후 조성 예정



대구 남구의회가 지난 1월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함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구 남구청,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 경상매일신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운데)이 지난 20일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남구청 제공

남구 청소년참여위 '청소년증 활성화' 사업 대상

김종현 | 승인 2020.10.25 21:10 | 댓글 0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대구 8개 구·군 9개팀 참여



참고 3 관련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03.02 조례 제12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 · 출연한 기관이 설치 ·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트레스 프리존"이란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을 낮출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프리존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스트레스 프리존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에게도 스트레스 프리존을 개방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에 대한 권장) 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제3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03.02 조례 제1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02 장려상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운영



분 야 자치행정 분야
기관명 경기도 화성시의회

추진배경

●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을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시민의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는 조례입법학교 개설 필요

추진내용

●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2020. 6. 3.)**

-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조례 입법학교 운영('20.8.~)**

- **(대상)** 화성시민 / 시의원
-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만18세이상 거주자
- **(내용)**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강의·워크숍·간담회 진행 → 자유토론·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조례안을 준비 → 완성된 조례안은 의원 발의를 통해 심의 후 시행 예정

|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일정 |

- 모　　집 : '20. 8. 28. ~ 9. 8.
- 기초강의 : 입법기초과정 4회
  -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민참여 중요성 및 주민참여제도 소개
  - 우리지역에 없는 타지역 우수 조례 찾기
  - 손에 잡히는 조례(조례입안 기초교육)
  - 유튜브 동영상 제작법(조례 홍보 활용)
- 심화과정 I (워크숍 2회)
  - 기초과정 연계한 심화과정으로 주제별 의견 공유 및 조례 제정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진행
- 심화과정 II (간담회 2회)
  - 쟁점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조례안 완성을 의견개진(전문가 자문)
- 완성된 조례안은 의원발의를 통해 의회 심의 후 공포

추진성과

- 쉽고 재미있는 강좌를 통해 조례에 대한 친근성 및 관심도 제고
- 입법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

참고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

[시행 2020. 6. 3.] [경기도 화성시 조례 제1631호, 2020. 6.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성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시와 시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조례입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화성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화성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를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03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분　야 자치행정 분야
기관명 경기도의회

추진배경

-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타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등 법체계성에 문제가 있는 조례, 집행가능성이 낮은 조례가 있어 조례의 제정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

〈 참고 〉 국내외 동향

- **(국외)** 1980년대부터 독일, 영국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 시행 중
- **(국내)** 2010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제도에 대한 연구 추진 중이나, 입법영향분석 관련 법률안 개정 추진이 무산되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추진현황

- '14. 1. 10.「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 '16. 8. ~ '17. 6.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분석 최초 실시
- '18. 9. 4. 도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18. 9. ~ '20. 12.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추진내용

| 경기도의회 사후입법영향분석 추진내용 |

구 분	'17년	'18년 ~ '19년	'20년
평가주체	외부 전문가	자체 평가 (조례 소관부서 및 도의회 입법조사관)	
예산투입	예산사업	비예산	
평가주기	1년	반기별	분기별
평가조례수	총 483개	총 212개	
		회당 평균 40여건	회당 평균 23건

● (~'17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실시

- 전국 최초로 조례영향분석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의의는 있으나, 연구보고서 내용상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는 등 어려움 발생

● ('18년~) 자체 사후입법평가 추진

- **추진방향**
  - 자체 입법평가 계획 수립, 추진으로 조례 정비의 상시화
  - 입법의 효과, 영향력 등을 감안한 선별적, 순차적 자치법규 평가
  - 조례 제 · 개정 등 결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평가의 객관화
- **평가절차** : (1차) 조례 소관부서 → (2차) 도의회 입법조사관 → (3차)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 **평가주기** : 반기별(연 2회) ⇒ 분기별(연 4회)

※ '20년부터 분기별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횟수는 늘리고, 1회당 평가조례수는 줄여 보다 심도있는 평가 추진

추진성과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후 입법영향평가 선도적 추진**

- 경기도 최초 시행 후 제주, 부산, 광주 등에서 도입 · 추진 중

※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 2014년 우수조례 대상 선정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사후 평가에 의한 자치법규의 적합성, 실효성 확보**

- 입법 개선안 도출 및 평가결과 환류(조례 소관부서 및 상임위)
-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 폐지토록 하여 자치법규 정비

※ 평가결과에 따라 17개 조례 정비 완료('18. 9월 이후)

기대효과

● **의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

-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입법 현실 및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안 발굴

● **도의회 입법정책 경쟁력 강화**

- 졸속 조례, 효과가 불확실한 조례 등에 대한 입법목적의 달성 및 실효성 점검으로 자치입법 정비 계기 마련
- 도의회 입법조사관 및 입법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평가·심의 및 입법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의회 고유의 입법기능 강화

●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 입법의 정책형성기능과 관련하여 날로 높아지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
-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자치법규 개선 추진

참고 1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추진경과

(최초) 2016 ~ 2017년

1 개 요

- 용 역 명 :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 업 체 명 : 이룸경영연구소
- 사 업 비 : 76백만원
- 용역기간 : '16.8.10 ~ '17.6.11(10개월) / '17.9.4. 준공
- 용역대상 : 시행 후 2년 경과 조례 총 483건

2 용역결과

검토 조례수	평가결과					비고
	적 정	정비 대상			폐지	
		소계	일반정비	심화정비		
483	261	215	149	66	7	

- 연구용역 결과 각 상임위 배부('17.9.11.)
- 정비 대상 중 일부개정 조례안 성안(9건) 후 상임위 배부('17.10.)

2018년 ~ 2020년

1 개 요

- 평가항목 : 6개 항목 * 조례 [별표 2]에 의거
  ①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② 유효성 및 효율성, ③ 공평성
  ④ 주민의견 수용성, ⑤ 지원의 적정성, ⑥ 조례의 필요성
- 평가시기 : 연 4회
- 평가대상 : 조례 제정(전부개정) 시행 후 2년 경과 조례

입법평가 대상조례 ('18.9.1. 기준)	연도별 평가조례 수							비고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20년 4분기	
212	38	41	42	22	24	25	20	

2 추진결과('20. 10월말 기준)

- 평가결과 : 적정 156, 정비필요 26(개정 17, 폐지 6, 통폐합 3), 기타 10
- 정비현황 : 정비 완료 17, 정비 추진중 3, 기타(현행유지 등) 6

3 평가절차

평가절차	추진내용
대상 조례 선정	• 주 관 : 입법정책담당관 • 내 용 : 대상 조례 선정(상임위별 2~3개)
⬇	
1차 평가	• 주 관 : 조례 시행 주관부서 • 내 용 : 기초 평가서 및 관련자료 작성·제출
⬇	
2차 평가	• 주 관 :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위원회 실무소위 • 내 용 : 종합검토서 및 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위원회 심의	• 주 관 :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 내 용 : 입법평가 자료 심의·의결 – 조례유지, 개선(제·개정, 폐지) 권고사항 등 심의
⬇⬆	
결과 환류	• 주 관 :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상임위, 집행부 • 내 용 : 심의결과 통보(위원회 → 상임위, 집행부) 조치계획 회신(집행부 → 위원회, 상임위)

참고 2 사후입법평가 정비현황 목록('18년 이후)

구분	평가결과	조 례 명	평가시기	비고
정비 완료 (17)	통폐합 필요 (2)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 하반기	폐지('19.6.18.)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폐지('19.6.18.)
	폐지 필요 (2)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폐지('19.1.14.)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폐지('19.6.18.)
	개정 필요 (13)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계약에 관한 조례	〃	개정('19.4.29.)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19.7.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개정('20.1.7.)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19년 상반기	개정('20.1.13.)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조례	〃	개정('20.1.13.)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개정('20.5.19.)
		경기도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20.5.19.)
		경기도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19년 하반기	개정('20.1.1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개정('20.5.19.)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개정('20.5.19.)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	개정('20.7.15.)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년 1분기	개정('20.5.19.)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년 2분기	개정('20.11.12.)
미 정 비 (9)	개정 필요 (4)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활동 지원 조례	'18년 하반기	검토 중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9년 하반기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개정 추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년 3분기	개정 추진
	폐지 필요 (4)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18년 하반기	검토 중
		경기도 킨텍스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19년 상반기	현행 유지
		경기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	'19년 하반기	폐지 추진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	검토 중
	통폐합 필요 (1)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18년 하반기	현행 유지

붙임 1 언론보도내용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14년 우수조례로 선정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조례 대상 수상

최 호 의원 개인부문 우수상, 이재준 의원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

CNBNEWS 이병곤 기자 | 2015.01.05 16:30:20

경기도의회가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결과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31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단체부문에서 원미정 의원(보건복지위, 안산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최 호 의원(안전행정위·의회운영위, 평택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가 개인부분 장려상으로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 고양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각각 선정되었다.

단체부문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와 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이 미흡한 현실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이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최 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의무를 규정한 조례이다.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서민금융 지원, 복지.자활 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도 개인부문 대상을 비롯한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한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입법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2월 6일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원미정 의원(왼쪽 첫번째)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14년 우수조례로 선정

서울신문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0.09.18. 오후 9:2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공감 댓글 요약봇 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 -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위촉식에서 성준모 민주당 도의원(안산5)을 위원장으로, 성결대 문원식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위는 업무보고 및 조례안 23건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안 운영 개선사항 등을 심의했다.

입법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준모 위원장은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Part 02

지역경제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강원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 | 강원도의회 |
2.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

01 우수상

강원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



분 야 지역경제 분야

기관명 강원도의회

추진배경

- 강원도는 이모빌리티 사업을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년부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 또한,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동반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모빌리티 생산조합과 연구조합을 중심으로 **강원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17.7월 이모빌리티 특화 산업단지를 준공한 이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17.11월)하고, 한국전기상용차융합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음.
- 다만,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19.12월 한국은행(강원본부)에서 '강원도 전략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육성 조례 등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의 필요성 언급

추진내용

-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추진을 위해 주기적인 육성계획수립, 핵심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관련 조합 및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20.5.15일 제정·공포됨.

  ＊ '20.4.9일 경제건설위원회 의원3명(조성호, 나일주, 조형연) 공동 발의

- 또한, 경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 상생협약 및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음.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19.8월)



경제건설위원회 현지시찰('20.6월)

추진성과

-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총사업비 57억원)

  - '20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한강수계기금 34억원 확보)

-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추진(총사업비 480억원)

  - 기재부 R&D 기반구축사업에 반영, 국비 240억원 중 '20년 100억원 확보

- 이모빌리티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 '20.8.31.

- 전기차 양산체계 구축(연간 5,000대 규모) : '20.10월

- 강원형 일자리 사업,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선정 : '20.10.20.

※ 정부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술개발 지원 및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센터,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원할 계획 발표

참고 1 강원형 일자리 사업모델

■ 개 념

▶ 연구개발 부터 생산·판매·A/S까지 기술·이익·리스크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생산조합 중심의 수평적 이익 공유 모델 구현

■ 운영방식



공동 연구개발 → 생산조합으로 기술이전 → 부품사 부품제공 및 완성차제조사 차량생산 → 공동 판매법인 설립을 통해 판매·유통 → 수익 배분*

* 제조비에 부품을 조달받아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정 생산 및 판매 규모 후 총 이익을 참여 비율만큼 참여사에 배분(참여비율 + 일정 인센티브를 더해 배분)

■ 이익·리스크 공유방식

● 이익 공유

–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는 참여 부품사의 영업이익 5%**를 **보장**하고 **2024년부터 이익공유**를 추진

* **(이익공유 금액)** 영업이익 5%를 초과하는 이익[1] × 40%　※ 1) 부품사와 동등하게 디피코도 영업이익의 5% 보장

· 상생형 일자리 기업 : 이익공유 금액 × 이익공유 비중

·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형 일자리 기금 : 이익공유 금액의 각 10%

· 타 지역 참여기업 : 이익공유금액 – (상생형 일자리 기업+지역사회+기금)

이익공유 금액 [디피코 매출액×(영업이익율 – 5%)귀속%]			
강원도 지역 이익공유 금액			타 지역 이익공유 금액
지역사회 공헌 (10%)	기금 (10%)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이익공유 금액×업체별 비중)	강원도 이외 참여기업 (이익공유 금액–강원도 지역 이익공유 금액)

● **리스크 공유**

– 부품의 독점계약 금지로 완성차 회사는 타 회사와의 경쟁을 감수하고 부품사는 초기 물량 부족에 대한 이익 감소를 감수

<table>
<tr><th></th><th>완성차제조사</th><th></th><th>부품회사</th><th></th></tr>
<tr><td rowspan="2">이 익</td><td rowspan="2">안정적인
부품 조달</td><td>부품사
본사이전, 공장건설</td><td>투자비용
증가</td><td rowspan="2">리스크</td></tr>
<tr><td>초기 물량 부족</td><td>이익 감소 감수</td></tr>
<tr><td rowspan="2">리스크</td><td>타 회사
경쟁 감수</td><td>부품
독점계약 금지</td><td>타 회사
부품공급 가능</td><td rowspan="2">이 익</td></tr>
<tr><td>(부품사) 영업이익 5% 보장
(자사) 영업이익의 40% 공유</td><td>부품공급협약</td><td>초기 이익 감소를
이익공유로 보상</td></tr>
</table>

참고 1 전기차 양산체제 돌입

강원도민일보

2020년 10월 30일
02면 (종합)



강원형 일자리사업 모델인 (주)디피코가 29일 횡상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현지생산공장에서 우병렬 도경제부지사,장신상 횡성군수,서성호 산업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 포트로(POTRO) 출하식을 개최했다.

강원산 초소형 전기차 '포트로' 본격 양산체제 돌입

배달차량 2158대 사전구매 예약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기대

강원형 일자리사업모델인 횡성 전기 완성차가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대표 송신근)는 29일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내 현지 생산공장에서 초소형 전기차 '포트로(POTRO·포르투갈어로 짐꾼)' 출하식을 가졌다.

이날 포트로 출하식은 우병렬 경제부지사,장신상 횡성군수,권순근 횡성군의장,함종국·한장수 도의원,서성호산업은행 본부장과 설비·부품협력업체 관계자,차량 구매고객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강원산 완성차 생산을 축하했다.

디피코는 출하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사전계약분 500대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디피코의 초소형 전기차 '포트로'는 적재량 250kg의 근거리 배달 전용차량으로,현재 국내에서 대형마트 배달용과 골프장,도시가스 검침 등의 용도로 사전계약 및 영업,구매협약을 통해 총 2158대의 공급이 예약돼 있다. 도는 강원형 일자리사업 모델의 주력사업인 디피코의 전기차 생산체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오는 2023년 2월까지 6개 부품협력업체의 횡성 이전 및 공장신축과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 등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신근 대표는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와 난관을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이겨낸 성과물이 비로소 신차개발을 통해 결실을 얻었다"며 "강원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적극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상현)은 이날 출고식에서 강원도내 첫 완성형 전기차 포트로를 1호로 구매했다.

박창현

(17.2*17.8)cm

참고 2 강원형 일자리 사업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

강원도민일보

2020년 10월 21일
01면 (종합)

횡성 전기차 '강원형 일자리' 선정

정부 2차 상생형 일자리사업 지정

3조원 효과 '신경제 생태계' 물고

11개 사업에 국비 1000억원 지원

강원도 대표첨단산업인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모델로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제2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됐다.

경제효과만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강원 신(新) 경제 생태계' 모델을 이끌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강원도를 제2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국 두 번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운영,경제동반선장을 강조해 1호인 광주형과 큰 차별점을 뒀다.

완성차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간 종속관계를 없애고 차량 개발 단계부터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이 협력,사업 초기 위험과 발생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주)디피코를 포함한 7개 기업은 742억원을 투자,총 50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4만7283대의 전기차 생산과 부품 8만세트 수출을 포함,총 2조16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됐다.

도는 강원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제조업의 현 위기와 지역내총생산(GRDP) 정체를 타개할 계획이다. 233억원을 들여 임대형 공장을 건립한 것은 물론 시험인증기업지원센터 건립(480억원) 및 향후 5년간 연구개발 비용으로 263억원을 투입,기반조성을 진행 중이다. 참여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확대 등 11개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상생형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라 이모빌리티 산업을 도 대표 주력 사업으로 육성,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형 상생형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 도는 2030년까지 총 2682명의 고용창출과 약 3조원의 생산유발,7663억원의 부가가치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명원 ▶관련기사 6·14면

(17.2×13.7)cm

02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분　야 지역경제 분야

기관명 부산광역시의회

추진배경

- 대기업계열의 SSM마트가 규제를 받아 전통시장 주변과 골목상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규모가 SSM마트보다 작고 자산규모가 5조가 되지 않는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독과점 형태로 발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 코로나19로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자재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여 영업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기초 축을 형성하는 소상인들에게 치명적 경제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의 SSM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출점 대상으로 제한되어 더이상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인근에 입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보고식자재마트와 같은 기업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입점을 규제할 법이 아직 분명하게 없는 상황
- 일반적인 기업형 식자재마트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업자를 중심으로 판매하나,일부 식자재마트는 규모가 SSM 마트보다도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
- 식자재마트가 시장을 완전하게 점령한 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 개인 점포나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마트만 살아남게 되어 조례로써 규제 필요

추진내용

●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관계공무원, 부산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겸 공청회를 개최

- 「(가칭)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논의

* 토론회 당시 조례 제명이 정해지지 않아서 대구광역시의 조례 제명을 그대로 적용하여 토론회 개최(좌장 도용회 의원)




BUSAN.com

골목상권 1km 내 서민경제특별지구 지정 길 열린다

●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상정하여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곧바로 시행

-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대기업 SSM 마트에만 적용하였던 특별지구 지정 규모를 중대형마트에게 적용

| 조례 주요 내용 |

- 1km 이내의 범위에서 서민경제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정된 지구안에서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지역과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도 예고해야 함.
-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의 개설로 인한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으면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인수와 개시, 확장 등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업체의 납품확대 등도 요구할 수 있게 규정

추진성과

●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가 등의 보호, 향후 준대형 식자재마트의 신중한 골목상권 접근 유도, 상생협력 촉진

참고 1 부산광역시 골복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20. 9. 30.] [부산광역시조례 제6251호, 2020. 9.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준대형점포"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영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5. "상품취급점"이란 개인사업자가 대기업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형태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6. "골목상권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이 조례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친 구역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보호지구 내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보호·육성과 준대형점포 및 상품취급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절차)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보호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 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

2. 골목형상점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지구 지정은 구청장등이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구·군에 서로 인접하거나 겹쳐 있을 경우 구청장등의 신청 없이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지구 지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고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호지구의 범위 및 위치

2. 보호지구의 지정·변경·취소의 사유 및 목적

제6조(점포개설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된 보호지구 안에서 준대형점포 및 상품취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이하 "점포개설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2.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에 따른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

② 시장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상생협력, 지역고용활성화, 지역업체납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준대형점포와 상품취급점의 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인조직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상당수의 점포가 매출액의 감소 등 상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7호의 상인조직 또는 보호지구 내 점포개설자와 동종의 30개 이상의 점포로부터 동의받은 상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일 경쟁업종의 현황

2.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현황

3. 상권 내 경쟁 현황

4. 그 밖에 상권 영향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점포개설자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필요여부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포개설자, 상인조직, 관련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구·군 또는 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점포개설자에게 제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과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와 구·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조정 신청 지원) 시장은 상인조직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을 하려고 할 때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법률자문, 상담 등 지원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9조(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① 시장은 점포 개설자에게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과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점가 상인회와 정기적 상생협력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경쟁력 향상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보호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2. 경영 컨설팅 등 경영혁신사업
3. 특성화 및 민·관 협력사업
4. 국·공유지의 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5. 지역화폐 활성화 및 온라인몰 플랫폼 지원사업
6. 그 밖에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대상)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통시장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및 청년몰 단체

참고 1 보도자료

부산시의회, 준대형 유통업체에 확산에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 제정

2020-09-11 13:50 부산CBS 박종석 기자

대구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식자재마트 등 준대형 점포 규제 조례
골목상권 상생 방안 등 명시화



'골목상권 살리기'에 부산시의회 팔 걷고 나서

김옥빈 기자 입력 2020.09.11 16:03 댓글 0

도용회 의원 외 3명,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동래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동래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윤지영 의원(비례, 국민의 힘) 등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도 의원은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

03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분 야 지역경제 분야

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추진배경

- '노동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덕구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권리보호 필요
-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단이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특히 요구됨

추진내용

-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19. 12월 말) 완료
  -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방향, 세부 추진사업의 제시 등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2019. 8. 29. / 15인)
  - 노동전문가 위촉(양대노총 시지부 사무처장, 지역노동조합위원장, 대학교수, 지방고용노동청 관련과장 등)
- 노동행정 전담기구인 대덕구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 설치(2019. 10. 1.)
  - 별도사무실 운영(공인노무사 1인 채용, 일반직 1인)

추진성과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행정이 법제와 사후처리 중심이었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노동행정은 사전예방과 교육, 노동자 공감, 실천 행정 차원에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짐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 2020년 노동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2월)
  - 여성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소위원회 구성(9월)

-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 운영 / 5개교 37학급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 13개소
  - 관내 노동자·주민 대상 노동관계법령 상담 / 71건

-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 한국공인노무사회대전충청지회 업무협약 체결, 노사상생 서포터 위촉(2월)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10월)

참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19.04.12 조례 제13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 · 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 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 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노동권리보호관) ① 구청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 산하 투자 · 출자 · 출연기관
3. 구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2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노동정책워킹그룹 회의(2018.12.13.) / 한국일보





노동정책워킹그룹 회의 (2018. 12. 13.) / 연합뉴스



노동 전문가 초청 토론회 (2019. 4. 22.)



조례 제정 (2019. 4.)



노동자 권리보호 증진센터 현판 제막식 (2019. 12.)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Part 03

사회·복지·환경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경상남도 청년 7조례」** | 경상남도의회 |
2.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의회 |
3. **조례제정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 충청남도의회 |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의회 |
5. **농어촌지역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 전라남도의회 |

01 대상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 「경상남도 청년 7조례」



분 야 사회·복지·환경 분야

기관명 경상남도의회

추진배경

● 저성장, 저출생의 흐름 속에서 불안정한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은 미흡**한 실정

- 청년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편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취업, 경제, 주거, 문화소비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 시각에서의 고민이 필요**
- 실제 청년이 처한 상황에 맞는 비전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청년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라는 적극적 당사자성 확보 필요**

●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 집중화 심화에 따른 청년인재 유출 및 인구 감소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시행이 시급**

※ '00~'18년까지 지방의 20~29세 청년 132.3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인구·일자리)** 도내 청년인구 지속 감소 및 일자리지표 저조

| 연도별 경남도 청년인구 변화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전체인구	3,365천명	3,374천명	3,380천명	3,374천명	3,363천명
경남 청년인구	667천명	652천명	634천명	618천명	606천명
청년인구 비율	19.82%	19.32%	18.76%	18.33%	18.03%
청년인구 증감	△11천명	△15천명	△18천명	△16천명	△12천명

| 경상남도 청년고용·실업률 현황('20. 2분기) |

지표명	'19. 7월 ('19. 2분기)	'20. 6월 ('20.1분기)	'20. 7월 ('20.2분기)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비고
청년고용률(전국)	40.5(43.2)	37.7(42.6)	37.7(41.7)	-2.8(-1.5)	
청년실업률(전국)	11.9(10.6)	9.9(8.8)	11.0(10.1)	-0.9(-0.5)	

● **(청년정책)**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을 목표로 10대 정책과제 126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 중

※ 청년정책 추진현황

- 청년정책 전담 조직 및 협의체 구성
  * 청년정책담당 신설('19.1.2. 시행) 및 청년정책추진단 확대 개편('20.1.2 시행)
- 청년정책위원회 신설('17. 11월)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 청년정책기본 계획 수립(5개년['19~'23년] 종합계획 / '19.3.15. 의결)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 도내 4개 시·군('20년 거제시, 남해군 / '21년 2개소 추가 선정)
- 청년을 위한 실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추진
  * 면접정장 무료대여(971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116명), 학자금대출 신용회복(151명)
- 청년특별도 조성 토론회, 청년활동 발굴, 방송 홍보 등

- 다만, **도정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 청년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 기회가 부족**한 실정

  * 조례의 대부분이 일자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지원대상·범위도 한정

※ 청년 관련 조례 제정 실적

- **(전국)** 청년 대상 조례는 '13년(광주)을 시작으로 시·도별 총 58건 제정
- **(경남)** '청년기본조례('16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19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19년)' 등 3건 제정

| 전국 시도별 청년대상 조례 현황('20. 8.기준)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조례수	58	7	1	2	2	5	2	2	2
비 율	100.0	12.1	1.7	3.4	3.4	8.6	3.4	3.4	3.4
순 위	-	1	17	10	10	4	10	10	1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수	7	2	2	3	3	5	4	3	6
비 율	12.1	3.4	3.4	5.2	5.2	8.6	6.9	5.2	10.3
순 위	1	10	10	7	7	4	6	7	3

※ 청년관련 조례 목적별 현황

- **(전국)** 전체 58개 조례 중 분야별로 일자리에 50%(29개)가 편중

  * 그 외 총괄[전분야] 29.3%(17개), 주거·생활안정 10.3%(6개), 참여·권리 5.2%(3개) 順

- **(경남)** 3개 조례 중 일자리 분야는 66.7%(2개)로 참여·권리, 주거·생활안정, 문화, 기타분야는 전무한 실정

| 전국 시·도별 청년 지원 조례 목적별 현황('20. 6. 기준) |

항 목	조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촉진과 일자리지원	29개 (50.0%)	강원(1), 경기(2), 경남(2), 경북(3), 광주(3), 대구(1), 대전(1), 서울(3), 세종(1), 울산(1), 인천(1), 전남(3), 전북(2), 제주(2), 충남(2), 충북(1)
권익증진과 발전지원	17개 (29.3%)	강원도(1), 경기도(1), 경남(1), 경북(1), 광주(1), 대구(1), 대전(1), 부산(1), 서울(1), 세종(1), 울산(1), 인천(1), 인천(1), 전남(1), 전남(1), 전북(1), 제주(1), 충남(1), 충북(1)
주거 등 생활안정	6개 (10.3%)	경기(2), 서울(1), 제주(3)
기타	6개 (10.3%)	경기(2), 광주(1), 서울(2), 전남(1)

추진내용

1 청년 및 청년의원 주도의 정책개발·연구활동 적극 추진

● **경상남도의회 역대 최초 청년정책연구회 구성** ('18. 7. 18.)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천방안 제시
  - 전국 우수 청년정책사업 벤치마킹 및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 도내 청년과의 소통간담회 개최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

● **청년의원과 함께하는 도정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19. 10. 16.)

- 청년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주관, 집행부 직원과의 토크콘서트 개최





청년의원과 함께하는 도정혁신 토크콘서트 – 청년정책연구회('19.10.16.)

●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 7조례' 제정 정책간담(토론)회 개최('20. 6. 25.)

- 청년단체에서 발굴한 청년 7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 실시

2 청년문제 해결의 키워드 '경상남도의회 청년 7조례' 제정

● **청년문화 육성, 주거·창업·생활안정 지원 등 분야별 조례 제정**

경상남도 의회 '청년 7조례' 목록

①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② 경상남도 청년 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③ 경상남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④ 경상남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
⑤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⑥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⑦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추진성과

● **청년이 청년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참여해 관련된 조례 제정**

● **청년 주거·생활안정·창업지원·문화육성 등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적 근거 마련**

참고 1 청년 및 청년의원 주도의 정책개발·연구활동

● 경상남도의회 역대 최초 청년정책연구회 구성

- (설립목적)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천방안 제시
- (설 립 일) '18. 7. 18.
- (구성현황) 도의원 7명(회장 장종하 의원)

  ※ 장종하(회장), 신상훈(사무국장), 김경수, 김진옥, 박준호, 성동은, 손덕상 의원
- (주요 활동사항)
  - 전국 우수 청년정책사업 벤치마킹 및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 도내 청년과의 소통간담회 개최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

● 청년의원과 함께하는 도정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 (추진배경) 청년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주관, 집행부 직원과의 토크콘서트 개최
- (추진개요)
  - 일자/장소 : '19. 10. 16.(수) / 경상남도의회(1층 로비)
  - 주　최 : 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
  - 참　석 : 40여명(도의원 6명, 집행부 (청년)직원 34명)
- (주요내용) 몸풀기 퀴즈, Q&A, 소통시간, 도의원 특강 등
  - [몸풀기 퀴즈]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한 퀴즈출제 및 정답자 선물 제공
  - [소통의 시간] 조별(6개) 도의원 참여를 통한 청년과의 소통 시간
  - [도의원 특강] 도정을 이끌어 갈 (청년)직원들의 역할과 과제

●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 7조례' 제정 정책간담(토론)회 개최

- (추진배경) 청년단체에서 발굴한 청년 7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의
- (추진개요)
  - 일자/장소 : '20. 6. 25.(목) / 경상남도의회(1층 대회의실)

    ※ 1차 도의원 정책토론회('20.6.9.) 기 개최
  - 참　석 : 20여명(도의원 7명, 청년단체 7명 등)
- (주요내용)
  - '청년 7조례' 관련 진행사항 보고(도의원 → 청년단체 대표)
  - '청년 7조례' 관련 청년단체 의견수렴 및 자유토론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장종하 의원 ↔ 청년소상공인('20.6.25.)



청년 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은 의원 ↔ 청년진해기획단('20.6.25.)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상훈 의원 ↔ 청년ON나('20.6.25.)



청년 주거 지원 조례

김진옥 의원 ↔ 민주청년포럼('20.6.25.)



청년 창업 지원조례

손덕상 의원 ↔ 청년창업협회('20.6.2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박준호 의원 ↔ 새봄('20.6.25.)



청년 생활안정 지원조례

김경수 의원 ↔ 청년플랫폼('20.6.25.)



※ 도의원 정책토론회(1차)

청년정책연구회('20.6.9.)





참고 2 경상남도 '청년 7조례' 주요 내용

①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정목적)**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프리랜서의 보호 및 지원, 피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프리랜서의 보호 및 지원대책 등을 담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프리랜서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표발의)**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 초선)

As-Is	To-Be
✔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 부재 ✔ 낮은 임금, 일방적 계약해지 등 각종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 발생 ✔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정책 부재	✔ 직업적 지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사회적 보호와 권리요구의 대상 규정 ✔ 보호·지원·구제 등을 위한 책무 부여 ✔ 법률·교육·상담 등 적극적 행정서비스 시행

② 경상남도 청년 문화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청년문화위원회' 설치·운영
  -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
- **(대표발의)** 성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4, 초선)

As-Is	To-Be
✔ 청년 예술인의 창작·작업 공간 부재 ✔ 경남 청년예술인의 실태 파악 미흡 ✔ 문화예술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가에 대한 관심 부족	✔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지원 ✔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 기회 제공 ✔ 청년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육성 ✔ 문화예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③ 경상남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청년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만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청년공간의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청년공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공간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표발의)** 신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As-Is

- ✔ 청년을 위한 역량강화, 커뮤니티를 위한 전용 활동 공간의 부족
- ✔ 다른 세대와 비교해 청년세대를 위한 놀이, 휴식, 대화의 기회 부족
- ✔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공감과 소통을 위한 참여 기회 부족

To-Be

-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의 장 제공
- ✔ 청년 스스로 자립을 위한 기회 활용
- ✔ 소통·공감·교류를 통한 다양성과 가치의 공유 및 실천
- ✔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가 발굴·육성

④ 경상남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

- **(제정목적)**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안정적 생활영위를 위한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청년주거기준 및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마련
  -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청년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사업의 실시
- **(대표발의)** 김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3, 초선)

As-Is

- ✔ 실직소득의 감소와 급격한 월세화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급증
- ✔ 장기적 고용·취업 여건의 악화로 청년의 주거여건은 갈수록 악화
- ✔ 선별적 주거지원 정책에 따른 정책적 사각지대 발생

To-Be

- ✔ 청년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마련
- ✔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양질의 주거공간 및 주거비 지원
- ✔ 청년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청년 관련 (전용)주택 공급의 확대
- ✔ 청년주거 복지수준의 향상

⑤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정목적)** 청년 창업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청년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 **(대표발의)**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6, 초선)

As-Is

- ✔ 창업기업의 71%는 경험이 전무한 신생기업
- ✔ 창업기업의 10곳 중 4곳은 1년 이내 폐업
  ※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 29.2%에 불과
- ✔ 청년창업 시 초기 투자자금 확보의 문제 심각

To-Be

- ✔ 청년창업과정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인식
- ✔ 청년을 위한 별도 창업공간 제공 및 지원시스템 구축
- ✔ 청년창업의 전 주기별 지원 플랫폼 구축

⑥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 **(제정목적)**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증진(시범)사업 추진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관리 방안 마련
- **(대표발의)** 박준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 초선)

As-Is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대에 따른 교통사고의 지속 증가
- ✔ 안전관리 기준 부재에 따른 사회적 문제 급증 (무단주차, 보행자 안전사고 등)

To-Be

- ✔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확대 시행
-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관리
- ✔ 안전관리 기준마련에 따른 사고 감소

⑦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정목적)**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추진
  -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 **(대표발의)** 김경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5, 초선)

As-Is

- ✔ 불안정한 경제활동에 따른 장기연체 등 청년 부실채무자 급증
- ✔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타 시·도 이주 청년의 지속 증가

To-Be

- ✔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 ✔ 구직활성화를 위한 면접정장무료 대여
- ✔ 청년정착지원 및 기타 생활안정지원
- ✔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등

02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분 야 사회·복지·환경 분야
기관명 광주광역시의회

추진배경

-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은둔형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지만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고,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모호, 검증 및 해결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

※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없으며, 2017년 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는 약 32만 명으로 추산

-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취업과 진학 실패, 직장과 학교 부적응, 부모와의 갈등, 따돌림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됨
  - 취업과 진학 실패 등 관계적 요인 자체가 현대 사회 전체의 문제
  - 은둔형외톨이가 장기화함으로써 야기되는 가족 붕괴 또는 해체, 정신질환 등 2차 피해가 가중 및 범죄 등 반사회적 형태로 표출이 되는 사건 발생

추진내용

● **정책토론회 개최**

-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해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의를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의견수렴 및 시책 반영**

-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

●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은둔형외톨이의 사회적 이슈 확산과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 (주요내용) 은둔형외톨이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

● **실태조사 실시**

- 광주시와 자치구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태조사 실시

● **지원계획 수립**

-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은둔형외톨이 지원계획 개년 계획 수립 중

개선성과

● **선제적 자치입법**

-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수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실태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선제적 입법

●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현황 파악 등**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 은둔형외톨이의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고,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자존감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탐색
- 지역 내 은둔형외톨이 지원정책 및 개입 전략 추진의 근거자료 마련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마련

●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 소외되었던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 복지서스비스 지원의 체계 구축
-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
- 일자리 창출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기여

참고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3. 광주광역시의원
4. 광주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립지원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13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는 시장이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3 우수상

조례제정을 통한 석탄화력 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분 야 사회·복지·환경 분야

기관명 충청남도의회

추진배경

-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2019년 환경부가 측정한 충남 대기오염배출량 58,775톤(전국 277,696톤, 전국 1위) 중
  - 석탄화력발전소가 31,475톤(53.5%)을 배출하는 등 이로 인한 주변지역 거주자, 특히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보령·신보령화력 : 11,547톤, 당진화력: 9,136톤, 태안화력 10,792톤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중당 호흡량과 산소 소모 대사율이 높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성장·발달 과정 장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유발

  ※ 현재, 집행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 영향조사 중(2018~2020)

현황 및 문제점

- 오염물질로 인한 영아가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중에도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실시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 (제도)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업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의견 및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선관위, 입법전문가 등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 작성 및 제정

- (재정) 20년도 충청남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편성된 상태로 당장 고통받고 있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

  ⇒ 발전3사(중부,서부,동부)의 사회적책임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와 함께 협의하여, 발전3사 기부로 '20년도 보급사업 추진('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 활용)

추진성과

-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석탄화력발전소 5km내, 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약 100여가구)
- 영아 가정의 **영아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조례를 통해 직접 피해받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등 자치입법의 위상 제고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 및 생활밀착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사례**로 관련 사회적 책임 사업 촉진

참고 1 신문보도 스크랩

충청투데이
2020년 06월 04일 (목)
정치 05면

석탄화력 인근 오염 노출된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김명선 충남도의원, 조례 추진…10일 정례회서 심의



충남도의회가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선 의원(당진2·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도서지역도 포함된다.

영아 부모는 보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영아는 출생부터를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한부모 가정, 부모가 없는 경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실제 양육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반환토록 하는 조항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나윤규 기자 sendne@ctoday.co.kr

113 X 176 mm

충청매일
2020년 06월 04일 (목)
지역 09면

석탄화력 주변 영아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지급 기준·대상 등 명시

충남도의회가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육지와 섬 모두 포함된다. 영아 부모는 보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영아는 출생부터를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한 부모 가정, 부모가 없는 경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실제 양육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반환토록 하는 조항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순우기자

223 X 71 mm

0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분　야 사회·복지·환경 분야
기관명 광주광역시의회

추진배경

- 광주광역시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도 36.9%, 2018년도 37.3%, 2019년도 37.6%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됨.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복시시설 중 일부는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등이 국가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짐.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실태 감사 결과('19. 8. 5),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실태를 감사해 11건을 적발(시정 7건, 주의 3건, 개선 1건)

추진경과

● 7대 의회「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제정 추진('18. 2.23)

- 광주지역 사회복지 단체로 구성된 '광주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폐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집회, 기자회견, 항의 방문 실시

●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조례안 부결('18. 4.16)

- 시장의 보조기관인 감사부서에 특정 분야 감사를 위한 사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인 지휘·감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시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역할을 넘어서 사무분장과 관련한 시장의 전속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제약·변경하고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대법원 2009. 9.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본 조례안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더 많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19. 1.15, 일부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2조의2 신설('19. 6.12, 시행)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함.

● 8대 의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간담회 실시('19.10.4.)

- 집행부 관련부서(감사위원회,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의견 청취

● 8대 의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실시('19.10.29)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광주복지공감 대표, 벧엘타운 원장, 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장) 및 집행부 관련부서(감사위원장, 복지건강국장) 토론 및 토론 참석자 의견 청취

● 8대 의회「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제정('19.12.15.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

추진성과

-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 2020년부터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2천 197개소(생활시설 217개소, 이용시설 1천 980개소)와 여성복지 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366개소 등 연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대상, 감사 기간, 감사 범위 등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내 사회복지시설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감사팀(사무관 1명, 주무관 3명) 설치('20. 1.13)



-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
-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들에게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추진일정 등

- 감사기간 : 연중
- 감사대상 :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 지도·감독기관 및 부서(자치구, 市 관계부서)의 요구 시*

    * 사전조사 결과 회계부정 및 보조금 부당사용 등 문제점 발견
  - 사회적 이슈 등에 따른 특정감사 필요 시*

    *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 등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타 기관(보건복지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감사범위 : 감사 요구사항 및 최근 5년 이내 운영 전반
- 감사방법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병행 실시
- 감 사 반 :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 사회복지감사팀 외 자치구 및 市 관계부서 담당자 포함

  ※ 필요시, 시 의회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 선임 및 합동감사반 편성 운영
- 감사중점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등 감사 추진
  -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적정성
  - 공사 및 구매 등 계약 관련 적정성
  - 부동산, 장비 등 자산관리의 적정성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 보고의 적정성
  - 종사자 채용 및 입소(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등
- 사회복지시설 감사 계획 수립 및 대상 확정 : '20. 1. ~ 2.
- 사회복지시설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20. 2. ~ 12.

참고 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제53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감사"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

   나.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다. 부동산, 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 사항

제3조(감사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사 대상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4조(감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 조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사의 실시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자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백한 불법·탈법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부서의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시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감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2. 감사 기간
3. 감사 범위
4. 감사반 구성 및 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시설 감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 반장과 감사 담당자를 두며,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파악

제10조(과다 감사 방지)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조사 기간 20일, 직접 감사기간 20일 이내 감사를 마무리하며,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 총평
4. 중점 감사 사항
5. 지적 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한 사항
6. 현지 조치 사항
7. 그 밖에 특이 사항

제12조(감사 결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 외 지적 사항 및 현지 조치 사항, 그 밖의 특이 사항 등 감사결과 보고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계획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관계 부서의 협조)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 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보도자료

무등일보

2019년 11월 28일 (목)
04면 종합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정기 감사 실시

김익주 시의원, 전담팀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 예산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가 이뤄진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사회복지시설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지역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천980개소 등 2천1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여성 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366개소 등이 연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내용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을 비롯, 공사와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사항 전반이다.

감사 실시 요건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 종사자의 불법, 탈법,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이다.

감사 대상은 정부와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복지시설 등이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14.1 X 9.9 cm

전남매일

2019년 11월 28일 (목)
05면 종합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팀 설치"

김익주 시의원 발의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감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지역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980개소 등 2,1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시설 366개소 등이 연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공사와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및 장비 등 재산관리사항 전반이며, 감사관이 조사와 점검·확인·검증 등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로 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실시 요건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목적외 용도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위반 ▲시설종사자 불법·탈법·위법·부당 행위 등이다.

아 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전진숙 의원의 발의로 제정이 추진됐으나, 복지



시설 운영자들과 시설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좌절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시행으로 복지시설 이용 시민들께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들에게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17.2 X 8.6 cm

광주매일신문

2019년 11월 28일 (목)
05면 종합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내년부터 2천600여곳 대상…투명성·공공성 확보 기대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김익주 (민주·광산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지역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천980개소 등 2천1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여성 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366개소 등이 연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공사와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사항 전반이며, 감사관이 조사와 점검, 확인, 검증 등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로 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실시 요건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 종사자의 불법, 탈법,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전진숙 의원의 발의로 제정이 추진됐으나, 복지시설 운영자들과 시설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하는 등 좌절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 감사 조례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께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11.5 X 11.4 cm

05

농어촌지역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분　야 사회·복지·환경 분야
기관명 전라남도의회

추진배경

-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거나,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값비싼 LPG 가스를 사용하면서 생활에너지 소비와 요금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음.
- '에너지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추진'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부기준 변경 및 도시가스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 2017.07.25.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자원통상부와 가스공사는 1시군 1수급 지점 기준을 고집함.
- 대통령의 특별지시 등이 있었지만 정부 담당부처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설치하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할 뿐 지방 도시가스 공급수요 충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부재

추진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가스공사 방문, 국회의원 및 보좌관 면담, 도시가스 공급기업 면담, 전라남도에 예산반영 건의 등 대책마련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 전개

- 정부의 제14차(2020년)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영암읍 등 농어촌지역 적극 반영 및 정책변화 촉구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설치 필요성, 가스공사의 시설부담금 지원 당위성 강조 및 정부예산 반영 적극 건의

| 주요 추진일지 |

- 2017.02.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 도시가스 관련 자료요구
- 2017.08.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예산반영 요구
- 2017.10.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에너지 담당과장 등 면담
- 2017.11. 우원식 국회의원실 건의, 산업자원통상부 서면질의
- 2018.01. 우원식 국회의원 면담, 영암읍 도시가스 설치 건의
- 2018.08. 서삼석 국회의원실 방문, 도시가스 설치 건의
- 2018.09. 전라남도청 담당국장 면담, 영암읍 도시가스 추진 협의
- 2018.11. 서삼석 국회의원실 건의, 예산안 심의시 서면질의
- 2019.02. 한국가스공사 방문, 도시가스 공급건의
- 2019.05. 국회방문, 우원식, 서삼석 국회의원실 방문. 산자부 담당과장 면담
- 2019.10. 전라남도-목포도시가스 면담, 국회의원 서삼석, 우원식, 송갑석 의원실 방문 건의
- 2019.11. 서삼석 국회의원실 건의, 예결위 증액 서면질의

●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발의, 제정** (2020.04.28.)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

●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통과** (2020.07.17.)

-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에너지 공급 지원 △에너지 시설 보급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에너지 요금 지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 조사 등 추진

● **영암군-목포도시가스, 영암읍 가스공급사업 업무협약** (2020.10.06.)

- 목포도시가스 재원, 도비, 군비 등 총사업비 127억원 투자, 2022년까지 35.4㎞ 관로 매설 지역정압기 1개 설치 예정, 영암읍 지역 2천 776세대 등 공급

추진성과

-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
  -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지원
- 연간 총 에너지비용 29억원 절감 혜택 기대

참고 1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우선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보도자료

광주매일신문

2020년 10월 09일
10면 (지역)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속도낸다

郡-목포도시가스㈜ 협약 2022년부터 2천883세대 공급
127억 투입 관로 매설·정압기 설치…年29억 절감 혜택

영암군은 지난 6일 군청 남산실에서 전동평 영암군수와 정경호 목포도시가스㈜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목포도시가스㈜는 자체 재원과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27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35.4㎞ 관로 매설과 지역 정압기 1개 설치를 진행한다. 영암군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 토지 사용 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 신속 처리 등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 현재가치(NPV Method) 127억원, 편익/비용비율(B/C) 1.879, 내부수익율(IRR) 6.089%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은 대불교에서 정압기 설치 위치인 청소년 수련원까지 13개 구간으로 나누고 개착, 압입, 하월 등 각 구간에 적합한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해 2022년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영암읍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되면 확정 수요 2천776세대와 추가 공급지역 107세대 등 총 2천883세대가 연간 총 에너지비용 29억원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삼호읍 일부만 공급돼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이 유발됐으나 숙원사업 해결로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영암군은 2015년부터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영암읍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을 요청했고 2018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했으나 제13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수년간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주택 및 농공단지 등 도시가스 수요 발생으로 영암읍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전남도내 군청소재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하나인 영암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6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향후 영암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 기자

(23.3×10.6)cm

전남매일

2020년 07월 17일
05면 (종합)

전남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제공한다

우승희 도의원 개정조례 발의…시설개선 등 지원



전남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용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복지사업 포함 등을 담고있다.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시설 보급이나 시설개선, 에너지 요금할인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빈곤층 등 도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16.9×6.6)cm

[2020.10. 영암군-목포도시가스, 영암읍 가스 공급사업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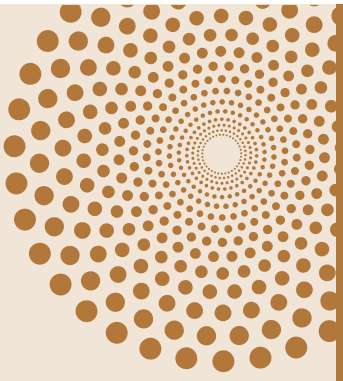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Part 04

교육·문화·생활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 | 전라북도의회 |

01 우수상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



분 야 교육·문화·생활 분야
기관명 전라북도의회

추진배경

● 올 8월 8일~10일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인해 전라북도 주택 파손 및 침수, 농·축산 피해, 도로·제방 유실 등의 막대한 피해 발생

전라북도 피해현황

- **(총피해액)** 1,379억원(공공 1,252, 사유 127)
- **(인명피해)** 사망 3명
- **(공공시설 2,289개소)** 도로·교량 235, 하천 417, 산사태 563, 기타 1,074
- **(사유시설 15,609세대)** 주택 990동, 농작물침수 6,875ha, 가축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2.4ha

● 피해는 주로 댐 하류 지역에 집중되었고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침수피해 발생 시점이 상류댐이 초당 1,800톤에 가까운 물을 방류한 시점과 동일하였음.

- 당시 피해지역주민들은 장기간의 장마에도 불구하고 댐이 사전방류를 하지 않고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간당 300m 이상의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물을 댐 하류로 방류하여 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피해원인규명을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댐을 관리·운영하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었음.

● 이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의 답답한 심경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원인을 직접 규명하고자 '수해원인 조사활동'에 돌입함.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 유실



용담댐 방류에 따른 충남 금산군 침수피해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물에 잠긴 남원시 금지면 용전·상귀·하도마을

활동 및 조사방향

● **활동개요**

- 활 동 명 : 재난피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긴급 원인 규명 활동
- 활동기간 : 2020. 8. 13. ~ 2020. 9. 2. (21일간)
- 활동내용
  -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용담댐 지사 등 방문
  - 홍수피해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촉구 건의

● **조사방향 :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집중 분석**

❶ 수자원공사 매뉴얼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❷ 호우 전·후 담수량 및 방류체계 문제점

❸ 댐·하천 관리 체계 관련 검토

❹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분석

❺ 피해보상 대책

활동상황

● 2020. 8. 13. : 재난피해 긴급 원인 규명 활동 1차 회의 및 기자회견

● 2020. 8. 14.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용담댐지사 방문
- 환경부장관, 수자원공사장 면담

● 2020. 8. 18.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장수 동화댐 방문

● 2020. 8. 21. :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켓 시위

● 2020. 8. 21. : 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건의(한병도·안호영 국회의원)

● 2020. 8. 27. : 재난피해 긴급 원인 규명 활동 2차 회의 및 기자회견
-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조사결과 발표

● 2020. 9. 3. : 전라북도의회 '댐 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정부 :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국회 :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0. 9. 4. : 환경부장관 조사결과 2차 면담(한강홍수통제소)
- 섬진강댐·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 보고서 전달
- 폭우피해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원인규명 즉각 착수 등 건의

● 2020.10. 12. : 전라북도의회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정부 :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 2020.10. 27. : 전라남도의회 섬진강·영산강 수계 호우피해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참석(이정린 위원장)

추진(조사)내용

* 세부조사결과 책자 별도 첨부

❶ 홍수기시 댐 수위 및 방류조절 문제점 분석 (*규정 위반사항)

- 홍수발생 전 사전방류 및 예비방류 미이행

  * 「댐관리규정」 제9조, 제13조,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

- 호우(홍수) 예측 및 특보 발령시 예비방류 미이행

  * 「댐관리규정」 제12조,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

- 홍수기제한수위 규정 위반 및 홍수기시 높은 저수율 유지

  * 「댐관리규정」 제14조,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

▶ 호우·홍수특보 발령 등에도 상황 예측(기상예측, 하천홍수위) 및 판단 능력 부재로 수위조절 및 사전방류 미이행

❷ 댐 관리 규정상의 문제점 분석 (*현 규정 문제점)

- 댐 홍수기 제한수위 등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홍수조절능력 결여

  * 「댐건설법」 제16조, 「댐관리규정」 제5조

- 예비방류 판단기준의 공간적 범위 협소

  * 「댐관리규정」 제13조

▶ 現 댐 관리규정은 홍수조절과 치수보다는 가뭄대비와 이수에 치중

▶ 現 홍수기 제한수위, 기후변화에 대응 곤란, 홍수조절기능 부재

❸ 댐 하류 하천 관리체계 분석

- 하천과 하천시설 관리주체가 다수 존재하여 치수차원의 하천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 관련 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하천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미흡(곡선부, 합류부 등)

- 댐 건설로 하류 하천 하상고 높아져 수림화 현상 발생

▶ 댐 관련기관(수공·홍수통제소·환경부·국토부·행안부·지자체) 간 협조체제 부재

▶ 하천시설별 관리주체 상이, 설계빈도·정비사업주기·관리기준 다 달라

▶ 댐 하류에서 발생하는 하천 하상고 상승, 수림화 등에 전혀 대응 못해 제방 붕괴 및 하천 범람 가중

❹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분석

- 홍수기 시 댐수위 방류량 조절 관련 기관 협조체계 전무
- 환경부(홍수통제소)의 역할 무능
- 재난수습 중심의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한계

> ▶ 관련 법, 댐 관리규정 등에 상황별, 절차상 관계기관(특히 지자체) 협조체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사후 대처 미비
>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재난발생의 사전예방까지 포함 확대

❺ 피해보상 대책 마련

- 재난지원금의 현실성 미흡, 특별재난지역 지원 부족
- 人災에 따른 수자원공사 전액 배상

> ▶ 재난지원금 현실 미반영, 생활·생계 붕괴한 수해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보상 촉구

추진성과

● 지방의회 최초, 정부조사 착수 전 수해원인 조사활동 착수

- 대규모 수해 발생 후 단 3일 만에 폭우피해 원인 규명 및 조사 착수, '20. 8. 13 ~ '20. 9. 2(21일 간) 동안 집중조사 실시
-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

●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의 데이터, 수치 등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

- 댐 관리 매뉴얼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와 댐 방류 실시간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행 규정과 운용상의 문제점 도출
-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요구, 하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원인규명 조사 진행을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전라북도의회 조사결과보고서



전북 남원시 수해현장 방문



한강홍수통제소 방문

● 수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면담

- 환경부 장관 등을 2차례 만나 수해 피해원인 분석자료를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수해원인 규명 및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여 정부가 재발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면담 ('08.14, 09. 04)

●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켜 범정부 차원의 조사 착수 돌입

①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20.9.3.)

②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20.10.12.)

● 기자회견을 통한 객관적 언론 홍보활동 및 조사자료 신뢰성 확보

● 국회 국정감사 및 전라남도 특별위원회 구성 참고 자료로 활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관할) 박덕흠, 윤미향, 윤준병, 홍석준, 안호영 의원실 자료(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 **박덕흠 의원(무소속)** : 국회 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9. 15)

– 댐 관리조사위원회 조속한 구성 촉구 및 위원회에 지자체장 및 지자체 추천 전문가 참여 고려 필요

● **윤미향 의원(더불어 민주당)** : 국회 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9. 15)

– 댐 관리조사위원회 구성 지연 지적, 현장의 고통,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환경부의 확실한 모습 보여 달라고 주문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홍수통제소 국정감사(10. 14)

– 홍수 상황에 대한 판단 미흡 지적, 주민들에게 댐 방류 승인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비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10. 19)

–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피해 인과관계 지적, 집중호우 전 사전방류량이 적었던 것은 기상청 예보를 못 믿었거나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판단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 국정감사(10. 23)

– 물관리를 위한 환경부·기상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의 협업체계 부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 업무처리 적정성과 업무분장 등 재검토, 기관 간 유기적인 체계 마련 당부

- 전라남도의회 '섬진강·영산강 수계 호우피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20. 9. 23)'에서 전라북도의회의 선제적 활동 조사 내용을 참고하는 등 일하는 지방의회, 앞서가는 지방의회 이미지 제고

●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에 전문가로 구성된 '댐 관리 조사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며, 보도자료(10. 23)를 통해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
- 보다 면밀한 조사와 매뉴얼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기로 결정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조사결과 발표 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표시로 재난지원위로금 전달(27억원/1인당 1백만원 정도)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켓시위

향후계획

- 환경부가 금번 대규모 수해원인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실시
-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에 피해주민 실질적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촉구
-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댐 관리에 지자체(전라북도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시스템 마련 건의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을 총괄한 수자원의 치수와 이수계획을 점검하고 담당부서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권고
- 기후변화시대에 대응 가능한 수자원 및 하천시설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책 제시 및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점검
-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선제적·선도적 대응을 통해 지역, 정부에까지 영향력 발휘 및 전문위원실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선도적 역할 수행

첨부자료 ❶ 수해 원인조사 활동 착수

全北日報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003면 종합

용담·섬진댐 방류 논란…전북도의회 수해 원인규명 착수

수공 댐관리 실태 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조절에 실패해 전북 내 수해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수공의 댐 수위조절 및 방류 실패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 재난 피해 원인 규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원·임실·순창과 무주·진안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 수공의 치수(治水) 부재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 피해 전후 댐 수위조절 및 방류현황, 평시·갈수기·장마기 수위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청 도민안전실 등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여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공 본사를 비롯해 용담댐 지사, 섬진강댐 지사, 환경부 등을 항의 방문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 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강용구(남원1) 도의원 역시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댐 홍수위를 불과 3m 앞두고 초당 1860톤의 물을 방류했다"면서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매뉴얼 지침대로 방류'했다는 핑계로 일관해 피해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수공이 초당 1860톤의 물을 흘려보내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임실과 남원·순창 지역 마을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원시 금지면 4개 마을은 완전히 잠겨 상당수의 수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했다"며 "수공은 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인재에 대한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 주민 지원·배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모 기자

전민일보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용담댐 유역 수해 원인 규명 착수

한수원·환경부 등 항의 방문 예정
댐 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추진

전북도의회가 섬진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3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및 방류 실패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 재난 피해 원인 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원·임실·순창과 무주·진안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치수(治水) 부재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 피해 전후 댐 수위조절 및 방류 현황, 평시·갈수기·장마기 수위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청 도민안전실 등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여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비롯해 용담댐 지사, 섬진강댐 지사, 환경부 등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댐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정린 위원장과 위원들은 "도내 댐 유역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활동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건주기자

첨부자료 ❷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 발표

전북도민일보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001면 종합



댐 방류 피해 원인규명 활동 기자회견이 열린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정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과 도의원들이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의 폭우 피해는 인재"라고 밝히고 있다. 김현표 기자

"섬진강·용담댐 수해는 인재, 水公 책임"

전북도의회 조사결과 발표
"홍수조절 사전방류 전혀 안해"
피해 보상·국정조사 등 주장

전북도의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섬진강댐과 용담댐 수계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댐관리 부실로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범정부 조사단 구성, 감사원 감사 및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분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 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홍수기 수위 및 방류 조절 실패, 댐 관리규정 부실, 댐 하류지역 관리체계 문제점, 댐 관련 기관역할 및 협조체계 부실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전북도의회는 "댐 관리규정상 홍수기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이 우선이며 홍수 발생시 방류량 조절을 위해 사전에 홍수량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 발생전인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는 전혀 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방류를 주장하지만 8월 8일 직전의 기상상황은 이미 전국적으로 각종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이어져 악화되고 있었다"며 "급격한 수위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예비방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 동안, 그리고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약 한 달 전인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다"며 "특히 섬진강댐은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 동안 계획홍수위를 최고 0.19m까지 초과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도의회는 댐 관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댐의 홍수조절기능을 나타내는 홍수조절량과 홍수기제한수위 등 댐의 제원에 대한 규정 조정에도 무관심을 보였다"며 "섬진강댐의 경우 2천42억원을 들인 보조여수로 건설로 홍수조절과 용수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사에 현안이 되어 방기했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은 "댐은 전라북도 위치해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어 수자원공사가 사고를 치면 댐이 위치한 관할 자치단체는 수습하고 복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며 "댐 소재지 시도의 기상상황과 안근댐의 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방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예비방류 검토 과정에서부터 관할 지자체장의 권한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피해를 본 지역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 시설물 강도 강화,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 지방하천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수관리와 정비사업 실시"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피해는 댐 수위조절로 홍수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는 댐관리의 기본원칙,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여타의 댐 용도에 우선한다는 방침, 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하여 충분한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Part 05

지방의회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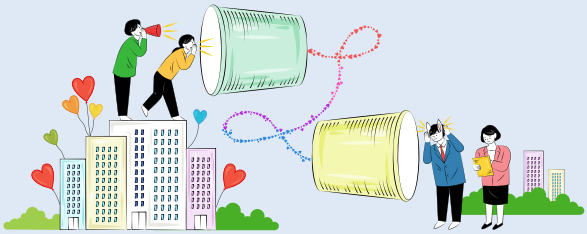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 서울특별시의회 |
2.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의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3. **청주시 의정활동 누구나·언제나 OK !**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4. **의정활동 全과정 전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서울시의회" 구현** | 서울특별시의회 |
5. **『정책소통 페스티벌』 상설화** | 인천광역시의회 |
6.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01 최우수상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분 야 지방의회 혁신 분야

기관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진배경

- 서울시 및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시민참여 유도 및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
- 의정모니터 통해 시민의견 적극 반영하여 시정 주요 문제점 개선
- 주요시책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로 시민참여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참여율 감소**
  - 서울시의회에서는 2018년부터 행정사무감사 활용토록 시민제보 접수하고 있으나,
  - 2019년 제보건수가 13건(2018년 대비 3건 감소)으로 **시민의 관심을 더욱 유도할 필요**
- **민원성 제보** 발생
  - 일반적으로 제보자가 제보를 할 때에는 제보특성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한계가 있음.
  - 이와 관련 제보의 본 취지인 공익을 위한 제보보다는 개인 민원성 제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근거 없는 주장 내용도 있어 제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0. 9. 25(금) ~ 10. 24(토)

▶ **제보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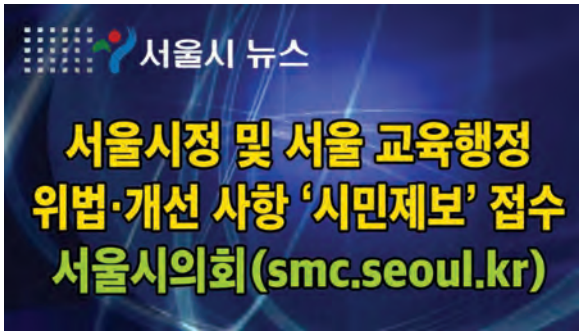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FAX, 방문 및 우편

추진내용

● 홍보 창구 다양화로 시민 참여율 제고

- 버스·지하철, 간행물 등 서울시 홍보매체 적극 활용하여 시민제보 홍보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소식지 내 시민제보 홍보·안내
- 포스터 제작 및 배포(자치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게재)



지하철 전광판 홍보



홍보 포스터

● **'의정모니터'** 시민제보 참여

- 의정발전 등을 위해 개선희망 요구 및 제안역할을 담당하는 의정모니터 분들에게 시민제보제도에 대해 적극 알리고 참여토록 안내
- 2020.10월 지정과제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부여하여 문제점 등 발굴

※ 의정모니터 요원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참여 교육('20.9.23.)

| 의정모니터(제10대후반기) |

▶ **의정모니터**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시민의 소리, 여론이나 불편, 부당사항의 내용과 개선 요구사항을 제안해주는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

▶ **구성방법** : 시의원 추천 및 공개모집으로 구성(현원 235명)

▶ **활동기간** : 2020.9월~2022.8월(제10대 후반기 의회)



의정모니터 시민제보 교육

● **주요 시책사업 정보** 제공

-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시책분석 업무'와 접목,** 시민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시책분석대상사업)을 주제로 시민의견을 도출** 유도
- 시민권익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제보창구에 시책분석대상사업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견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함.

추진성과

● 제보 참여 건수 증가

- 2020년 시민제보 참여 건수는 **총 53건**으로 2019년(13건), 2018년(16건) 등 전년대비 **참여 건수 대폭 증가**

※ 시민제보 총 53건 접수 : 홈페이지 등(18건), 의정모니터 의견(35건)

- 시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 소통하는 의회 확립 및 **시민제보 참여 활성화 토대 마련**

● 제보의 질적 수준 제고

- 의정발전 및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의정모니터 요원 대상 시민제보 교육 실시 및 참여**로 제보 활용도 제고

- **피동적인 시민제보 접수를 개선**하여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유도** 및 행사무감사 활용하여 집행부 견제 기능, 의정활동 지원 강화

첨부자료 언론보도사항

문화일보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009면 전국

"서울시·교육청 위법 행정 제보하세요"

서울시의회 감사 앞두고 접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청과 시교육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곤란을 겪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진행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청과 시교육청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제보하면,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 이메일(smcminwon82@seoul.go.kr), 우편, 시의회 의원회관 4층 시민권익담당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접수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을 지키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한겨레

시정 위법·부당 사항 시민 제보 받아

S4면 1단 기사입력 2020.10.08. 오후 3:5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공감 댓글 가

[한겨레]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11월3~16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24일까지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 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누리집(smc.seoul.kr),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news1

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사항 시민제보 받아...행정사무감사에 활용

기사입력 2020.09.25. 오후 9:0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공감 댓글 요약봇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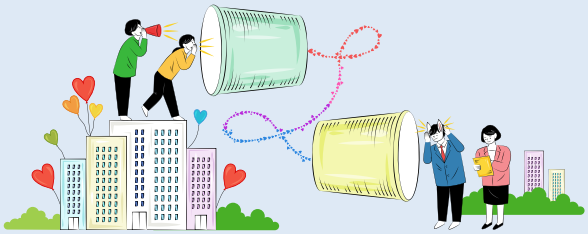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02 장려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의 변화



분 야 지방의회 혁신 분야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진배경

●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이라는 11대 후반기 의회 비전 실현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집행부의 합리적인 견제기구로서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의회 내부부터 변화하는 혁신 추진

추진내용

1. 조직 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운영
2.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탈 권위 행보
3.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4.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

1 조직 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운영

● 취지 및 목적

- 후반기 의회 비전 실현과 제주의 코로나19 위기 신속 대응 및 의정역량 제고를 위해 의회조직 혁신과 의원 역량강화 도모

● 구성과 역할

구 분	내 용	
고 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의회혁신기획단장	홍명환 의원	
실무총괄기획	김광섭 의회운영전문위원	
실무지원팀	(1) 의회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 (의회사무처 관련 조례 정비 등)	최춘규 정책연구위원 오원섭 입법정책팀장
	(2)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성화 (상임위원회 조정 및 역할 강화 등)	임정현 정책연구위원 박성준 정책연구위원
	(3) 상설정책협의회 추진 및 의회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김동희 정책연구위원 김태완 총무팀장
	(4) 의회 도민소통강화 프로그램 개발	김경남 정책연구위원 김정수 공보팀장
행정지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총무담당관실	

● 추진사항

① 의회혁신 제1호「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안 발표 : '20. 7. 30.

☞ 도의원의 인사청탁·성희롱·사적노무 요구 금지를 명시하여 청렴하고 성평등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 모습 정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
2.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도의회의원이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
4. 도의회의원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2020. 9. 25)

② 의회혁신 제2호「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등 발표」: '20. 8. 10.

☞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의 외부강의 금지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집행부 견제 시 공정성 담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외부 강의 허용 기준, 2020. 9. 1. 시행]

○ 회기 중 및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의 경우만 허용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상임위원장(전문위원실) 또는 사무처장(담당관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집행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강의(심사 자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의 경우만 허용

▷ 법률 및 조례 등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 피감기관 주재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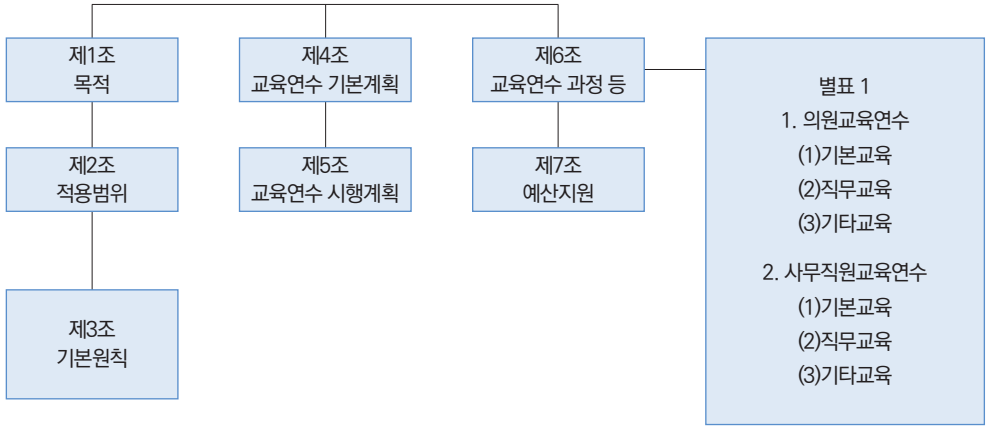
▷ 피감기관 자체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만료 전까지

▷ 인재개발원 강의를 하는 경우

③ 의회혁신 제3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 연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표 : '20. 8. 20.

☞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 습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활동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외부 강의 허용 기준, 2020. 9. 1. 시행]



*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2020. 9. 25)

④ 의회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중)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설정
  - 정책분석담당관(팀) 신설을 통한 의회 정책분석 기능 강화
  - 상임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실 5급 직제 신설 등
- 의회사무처 인사제도 개선
  - 일반직 공무원 전출기준 마련, 정책연구위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방안 등
- 상임위원회 조정방안 검토
  - 보다 효과적인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상임위원회 신설 또는 조정 검토
- 현장중심 도민 소통 프로그램 제안
  - 사랑나눔 봉사활동, 의회 홍보대사 운영, 도의회 의정대학 운영 등
- 도민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구축
  - 타기관 이송 청원·진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신뢰도 향상

※ [별첨1]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및 운영관련 보도자료(p. 9 ~ p. 13)

2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탈 권위 행보

①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 높이 하향 조정

■ 시행취지

-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이 너무 높아 의원 및 도민들에게 권위적인 이미지로 보여 지고 있어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의장석 단상 높이 하향 조정 추진

■ 추진사항

- 의장석 단상 높이 하향 조정: 90cm → 40cm (↓50cm)

☞ 의장석 단상 높이를 의원석 높이와 유사하게 낮춤으로써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이라는 의정 방침 이행을 위한 의회의 의지 반영

②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원을 배려한 경사로 설치 및 전동 발언대 설치

■ 시행취지

- 본회의장 발언대 앞 계단과 발언대 높이로 인하여 그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의원이 별도 마련된 발언대에서 발언해야 하는 상황

■ 추진사항

- 본회의장 발언대 단상까지 휠체어 접근을 위한 이동 경사로 설치

- 높낮이 및 좌우 방향 조절이 가능한 전동 발언대 설치

☞ 장애를 가진 의원도 타 의원과 동일 장소, 동일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소외된 약자,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

■ 시행취지

-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의정방침으로 설정하여 소외된 약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의지 표명

■ 추진사항

- 공무원 노조, 노동단체, 도청 앞 장기 농성중인 '천막촌 사람들' 초청 대화
- 사회복지시설, 군·경 경비부서, 전통시장 방문 의견 청취

※ [별첨2] 탈 권위 행보 관련 보도자료(p. 14 ~ p. 15)

3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정

■ 시행취지

-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국외 연수로 인하여 부정적 인식이 있어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

■ 추진사항 (조례 주요내용)

-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공무국외 출장 제한 조항 신설 (조례 제9조)
-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조례 제14조)

☞ 위기상황 발생 시 국외 출장 제한, 출장 후 결과보고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제고

② 의원 국외연수비 자진 반납

■ 시행취지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의 어려움과 함께하기 위해 의원 국외연수비 자진 삭감

■ 추진사항

- 의원 국외여비 삭감: 1.2억원

※ [별첨3]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p. 16)

4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

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 시행취지

-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10%에 달하는 2만5천~3만 여명이 희생당한 참사로 지역의 아픈 역사임.
-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2003년 정부가 진상보고서를 통해 4·3희생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임을 밝히고 대통령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였으나,
- 희생자 배·보상과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민의 아픔 해소를 위해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활동 전개

■ 추진사항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 상정 처리
- 전국 11개 광역의회 방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당위성 설명 및 촉구건의 발의 요청 (17개 광역의회 중 7개 의회 채택, 6개 의회 발의 또는 상임위 의결)

☞ 4·3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②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 시행취지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입지선정 과정, 기존 공항 확장 가능성, 환경수용성 등이 쟁점이 되어 도민 사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2공항 추진 관련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 전개

■ 추진사항

-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 개최
-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 개최

☞ 국토부 및 제2공항 건설 찬·반 단체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도민사회 찬반 논란 등의 갈등 해소 도모

※ [별첨4]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 관련 보도자료(p. 17 ~p. 19)

추진성과

-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위의식과 특권을 내려놓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 노력
- 의회의 변화 시도와 탈 권위 행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의회 위상 제고
-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의정 실현

※ [별첨5] 의회 혁신 관련 보도자료(p. 20 ~ p. 21)

별첨 1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운영 관련 보도자료

■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관련 보도자료

제주신문

조직 개혁·역량 강화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홍명환 의원 단장 임명…포스트코로나 위기 극복 대응

제주도의회가 의회조직 혁신과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혁신기획단'을 9일 출범시켰다.

혁신기획단은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홍명환 의원을 의회혁신기획단장으로 임명했다.

기획단의 운영 목적은 의회 내 원활한 의원 수련을 통한 의회조직 혁신과 의원역량 강화를 통한 포스트코로나 도민위기 극복,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등이다.

기획단은 좌남수 의장의 4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활동할 예정으로, 좌 의장이 제시한 핵심과제는 대도민접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소통 촉진, 의회 내 조직체계 및 인사시스템 정비, 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등의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기능 보완 및 조정, 전문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회교육·훈련 강화 등이다.

홍명환 의회혁신단장은 "임기 임시회 이전에 4대 과제와 관련한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과 중·장기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와 조례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좌남수 의장은 "도민과 의회 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활성화해 도의 합리적인 견제기구로서의 임무를 보다 충실히 하겠다"며 "의원교육 및 연찬과 토론회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의정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도민민생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허영호 기자 hyh8033@jejupress.co.kr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상임위 개편 공론화 시동

의회혁신기획단 어제 첫 회의서 자문단 추가 선임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은 1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일정과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자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상임위원회 신설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상임위 활성화를 위한 조정 논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단장 홍명환 의원)은 1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일정과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회혁신기획단은 이날 중 도의회 의원 대상 1차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조직진단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지원팀별로 ▷의회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의회사무처 관련 조례 정비 등)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성화(상임위 조정 및 역할 강화 등) ▷상설정책협의회 추진 및 의회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의회 도민소통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 조정 논의 과정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분야 상임위 신설이 현실화될 지 관심사다.

기획단은 순차적으로 8월까지 혁신속도와 범위를 정해 시기별(장기, 중기, 단기)로 혁신안을 도출하고, 고문과 자문단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혁신안 중 우선 처리 가능한 세부과제는 조례 및 규칙 개정안과 결의안 등을 마련해 9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홍명환 단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고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의회가 중심을 잡고 더 일하는 의회, 더 전문적인 의회,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한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회혁신기획단의 도의원 자문단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문경은·송영훈 의원,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부공남 교육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오은지기자 eioh@halla.com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 관련 보도자료

제주도민일보

도의원 인사청탁·성희롱·사적노무 요구 등 금지

좌남수 의장, 의회 혁신 제1호 조례 대표발의



제11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 제1호 조례안으로 인사청탁·인사개입·성희롱·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도의원 윤리조례가 신호탄을 쏘았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9월 임시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역시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뒀다"며 "향후 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좌 의장은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절차에 따라)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관련 보도자료

제주매일

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엄격해진다

의회 혁신2호 발표…자체 기준 마련
도의장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기준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번 외부강의 참여기준 강화를 통해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태홍 기자

제주신문

의회사무처 공무원 회기 중 외부강의 금지된다

도의회, 의회 혁신 2호 기준 마련 시행…의정활동 지원 전념

제주도의회가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보도자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혁신 3호는 "의회 전문성 강화"

좌윤철 기자 (ja4038@hanmail.net) 승인 2020.08.20 10:49

의회 소속 공무원 '의회전문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및 근무평가 반영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전입 3개월 내에 반드시 '의회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0일 의회 혁신 제3호로 의회의 전문성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가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의회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이다.

대표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입 3개월 내에 '의회 전문 교육과정'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

이를 위해 제주도인재개발원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타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업하여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매년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해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 몫을 한다는 점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의원들이 의회공무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이를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 임시회 회기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은 의회혁신 1호안으로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호안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와 도 산하위원회 위원 겸직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별첨 3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

■ 의장석 단상 높이 하향 조정, 전동 발언대 설치 관련 보도자료



道의원 해외 출장 결과 보고 의무화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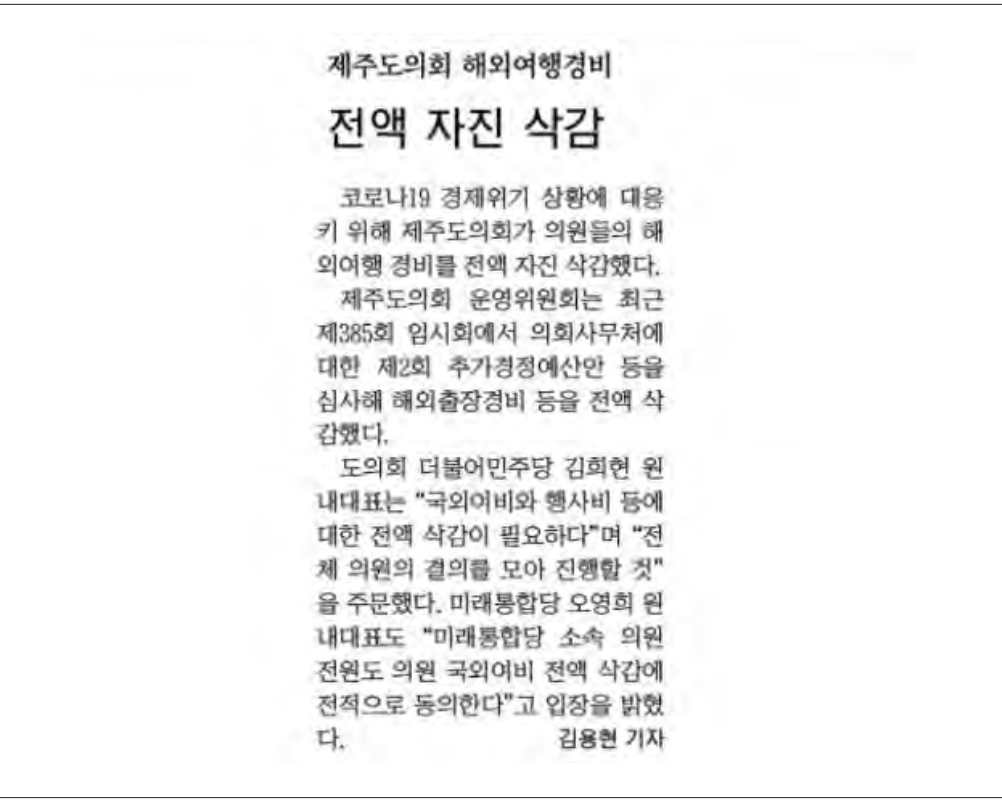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 후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재난 등 위기상황 시 출장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의회 의원이 공무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도의원의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지역 내 위기상황 발생 시 공무국외 출장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해외 사례조사 공유 간담회를 통해 공무국외 출장 결과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도화하게 됐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일부 지방의회 위원의 공무국외 연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 도의회 의장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제주도의회 해외여행경비

전액 자진 삭감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키 위해 제주도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전액 자진 삭감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385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 해외출장경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는 "국외여비와 행사비 등에 대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며 "전체 의원의 결의를 모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도 의원 국외여비 전액 삭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기자

별첨 4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 관련 보도자료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관련 보도자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4·3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전국 의회 동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난 12일 정기회서 채택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을 조속히 건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로, 다른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좌남수 의장, '4.3특별법 개정' 전국 '연대 붐' 조성 순회방문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 승인 2020.09.17 14:22 | 댓글 0



좌남수 의장이 17일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을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이를 위해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 부의장(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협조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좌 의장과 정 부의장은 17일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부산시의회까지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건의문 채택 협조 요청과 함께 그동안 제주도민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특별법이 시행 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제주4.3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제주도민을 위해 연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시.도의회 방문을 마치는 대로 국회를 찾아 주요 정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좌 의장은 앞서 지난 12일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전국 지방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채택한 전국 시도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5곳이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서울시 강서구의회가 조만간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관련 보도자료

도의회 특위, 제2공항 쟁점 해소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지역주민 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

내달 2일 시작해 총 4회 진행…12월 이전 결론 낼 것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오는 7월 한 달간 열린다.

특히 토론회 이후 모아지는 도민 여론과 찬·반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공론조사,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28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 계획을 발표했다.

공개토론회 계획은 지난달 28일까지 세 차례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공항 특위, 국토교통부, 제주도, 제2공항 반대 측(비상도민회의)이 큰 틀에서 합의한 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7월 한 달간 매주 한 번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다. 제2공항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다.

1차 토론회(7월 2일)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 수용성)', 2차(7월 9일)는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3차(7월 16일)는 '입지 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을 주제로 열린다. 마지막 4차(7월 24일)는 종합토론으로 정해졌고, 다만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합의될 경우 5차(7월 30일) 토론회도 열릴 수 있다.

토론 시간은 약 4시간으로, 현재 제2공항 특위와 제주도가 실시간 TV·인터넷 중계 방안과 함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제2공항 특위는 토론회 이후 모아지는 도민 여론과 찬·반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공론조사,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의 구체적인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철 특위위원장은 "충분히 숙의하는 것도 좋지만 논란이 오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12월까지지만 그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빈 기자 ksb2987@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19~20일 끝장 토론

당초 12·13일서 1주일 연기
ADPi 권고안 적용 여부 검증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12일과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심층 토론회가 일주일 연기됐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당초 12~13일 성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 예정이던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끝장 토론회 일정을 19일과 20일로 연기했다.

토론 주제는 지난 공개 토론회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현 공항 확충 방안이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9명씩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 방안에 대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가 다뤄질 예정이다.

ADPi보고서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에 대해 19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 개선을 통해 4000만명 이상 관광객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개 권고안중 현재 제주공항에 적용하지 않은 항목은 ▷항공기 분리 간격 ▷신규 독립 평행항로 ▷주·보조 활주로 공동 운영 ▷주기장 시간당 운항횟수 등 4가지다. 토론에서는 이 4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 특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한 후 연내에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석주 기자

별첨 5 의회 혁신 관련 보도자료

제주의 소리

의정단상 낮춘 좌남수 의장, 취임 100일 탈권위 행보 '눈길'

인사청탁금지 등 취임 후 의회 내부혁신 속도전…각종 현안 소통·대응 강행군

취임하자마자 본회의장 단상부터 낮췄다.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위한 첫 행보였다. 의장실로 도청 앞 천막촌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였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 동안 내부적으로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외부적으로 도민과 사회적 약자에 더 가까서는 소통행보로 강행군을 펼쳤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쳐 적잖은 성과들을 도출해냈다는 평가다.

좌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결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전국 이슈화를 시켰다.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4일 동안 전국 10개 광역의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공감을 유도해 냈다. 시·도의회에서 '4.3특별 개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잇따랐다.

좌 의장은 현안 현장에서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췄고, 소외된 약자들과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했다. 태풍 내습에 대비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는가 하면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이장단협의회, 공무원노조, 천막촌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벌이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찬·반 단체를 모두 초청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토교통부 김상조 공항정책실장 등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여러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 두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좌 의장의 취임후 탈권위와 특권의식 내려놓기는 역대급으로 평가받는다.

의정 단상을 개원이래 처음으로 낮춰 동료의원 및 장애의원들과 눈높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 의회 내외적으로 호평이다.

또한 의회 내부 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켜 조직내부를 정비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현안에 즉각 대응을 위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는가하면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해 제주형 뉴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4개항에 합의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좌 의장은 도의회 혁신 1-3호(인사청탁금지 윤리강령, 공무원외부강의 기준 강화, 의회전문 교육과정 이수의무화)를 발령해 청렴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실천,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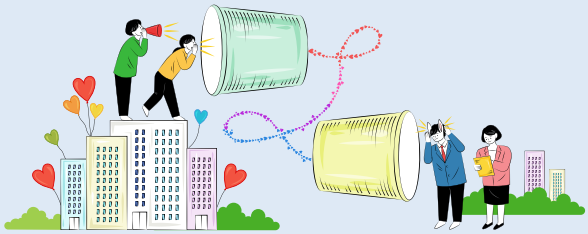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군·경 경비부서, 전통시장을 돌며 그들의 아픔과 애로를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민생탐방과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도의원 10명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200여명에 이르는 내방객과 소통행보 그리고 50여명의 외빈 접견을 통해 현안해결 의지를 다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으로서 기재부와 해수부, 국회 등을 방문, 긴급한 제주현안 예산을 설명하고 9개 사업 400억여원에 이르는 국비 확보에 청신호를 얻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좌 의장은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과 대화와 토론이 상존하는 소통의정, 의원들의 권위의식이나 특권을 내려놓고 도민들의 눈높에 맞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초심대로 도민을 위한 따뜻한 의정을 펼치는데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3 장려상

청주시 의정활동 누구나·언제나 OK !



분　야 지방의회 혁신 분야

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추진배경

- 시의회 활동 관련 자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문, 동영상, 홈페이지, 간행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소비자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 보장 및 소비패턴 변화(모바일 기기 대중화 등)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필요성 대두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 청주시의회 수어통역 서비스 운영
  - 시행시기 : 2020년 2월
  - 통역기관 : 청주시 수어통역센터
  - 내　　용 : 인터넷 방송 수어통역 실시 (도내 기초의회 중 최초 실시)
- SNS 의정홍보 활성화
  - 시행시기 : 2020년 7월

- 내 용

채널	구분	콘텐츠 형태			제작방향 및 주제	시기	비고
		기존		변경			
페이스북	보완, 변경	단순 사진, 언론보도게시	➡	– 카드뉴스 – 이미지 – 영상 – 인포그래픽 등	• 회기일정 및 내용 • 5분 발언 • 상임위원회 활동 • 의정소식, 정보 등	수시	
트위터	보완, 변경	단순 사진, 언론보도게시	➡	– 카드뉴스 – 해시태그 텍스트 (140자 내 해시태그)	• 회기일정 및 내용 • 의정활동 및 소식 • 각종 정보 등	수시	
인스타그램	신규개설 (2020. 7. 개설)	– 감성 사진 – 카드뉴스 – 이미지 1분 이내 영상 등			• 의정활동 및 정보 • 청주 문화, 관광 • 교육 소식 등	수시	인스타그램 주 이용자 20~30대 맞춘 콘텐츠
유튜브	신규개설 (2020. 9.~12. 파일럿)	동영상(제작 및 편집) 썸네일 등			• 5분 발언 • 의정 홍보영상	수시	

추진과정

● 청주시의회 수어통역 서비스 운영

- 2019. 8. : 기본계획 수립
- 2019. 8. : 업무협약 추진 (청주시의회 ↔ 청주시 수어통역센터)
- 2019. 12. : 관련예산 확보 (수어통역촬영용 카메라, 수어통역수수료 등)
- 2020. 2. : 제49회 임시회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실시

● SNS 의정홍보 활성화

- 2019. 12. : 기본계획 수립
- 2019. 12. :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 요청 (청주시의회 → 청주시)
- 2020. 3. : 전담직원 채용의뢰 (청주시의회 → 청주시)
- 2020. 6. : 전담인력 채용
- 2020. 6. : 기 운영 SNS매체 보완, 운영 변경
  (단순사진게시→디자인, 픽토그램,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편집 등)
- 2020. 7. : 청주시의회 인스타그램 신규개설
- 2020. 9. ~ 12. : 청주시의회 유튜브 개설 및 파일럿 운영

주요성과

- 청각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의정참여 기회 제공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 등 기본권 보장)

- 새로운 SNS 채널 확대로 다양성을 확보한 의정 홍보를 강화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구독자 유입 확대
  - 페이스북 채널 전년대비 평균 도달건수 약 200%상승
    (전년도 평균 도달건수 40건 → 2020년 평균 도달건수 129건)
  - 디자인을 활용한 콘텐츠 게시 증가
    (전년도 6월~9월 단순사진게시 61건 → 2020년도 6월~9월 카드뉴스 82건)
  - 인스타그램 신규채널 구독자 생성 및 확보
    (운영기간: 2020. 8. ~ 9. 한달간 팔로워 65명) ※프로모션 미 진행 순수 구독자 수

-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기존)의회 소식 및 회기 사진, 보도자료 게시
  - (변경)의회활동 및 청주시 다양한 정보제공(코로나, 교육 및 행사, 생활 정보 등)

- 청주시의회 SNS 조회 수 지속적 증가

참고 1 언론보도

동양일보

2020년 02월 11일 (화)
12면 인물

청주시의회, 충북기초의회 최초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선보였다.(사진)

시의회는 10일 열린 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가 개회사와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등을 수어로 전달했고 이 모습은 시의회 홈페이지 생방송 등을 통해 송출됐다.



하재성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15.4 X 6.3 cm

충청타임즈

2020년 02월 11일 (화)
05면 종합

청주시의회, 49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어 통역서비스

청주시의회는 10일 개회한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의회는 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세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한다.

시의회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청각장애인이나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수어 통역센터 소속 통역사 2명이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처리, 시정질문과 답변 등을 동시 수어통역해 인터넷으로 송출한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첫 서비스를 한 통역사 신명희씨는 "본회의 현장을 청각장애 시민에게 생생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12.3 X 6.8 cm

참고 2 청주시의회 페이스북 조회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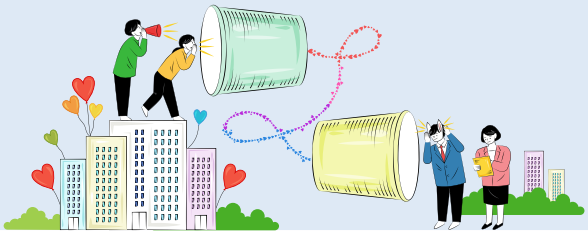


04

의정활동 全과정 전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서울시의회” 구현

분　야 지방의회 혁신 분야

기관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진배경

- 의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곳에 집대성하여 의정활동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어디서나 의정정보를 공유·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는 종합 의정지원시스템 마련
- 전염병 확산이나, 재난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중단없는 의정활동과 입법발의를 할 수 있는 의정환경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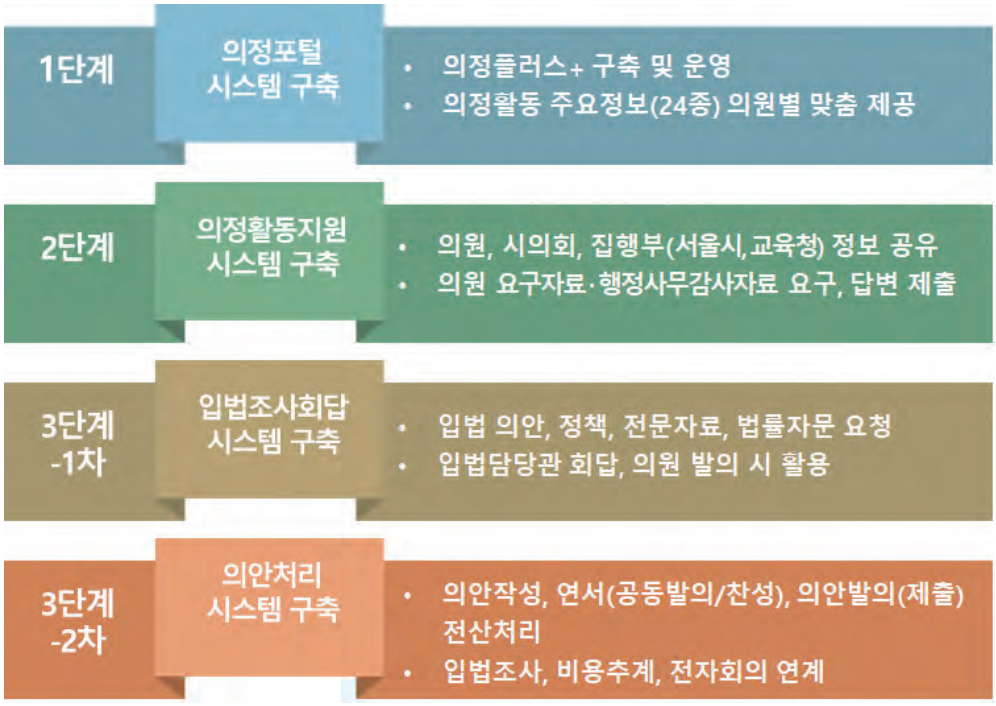
⇒ 의정활동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ONE-STOP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실시)

추진전략 및 방향

● 추진전략

-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 정보화 추진
- 「서울시의회 의정 정보화 로드맵」 수립 (ONE-STOP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시의원의 활동 편의성 증대
- 의정포털서비스를 통해 의원별 의정활동 자료를 맞춤 제공 및 의정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인증,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 입법활동 全 과정의 전자화 완성과 의원별 입법정보의 체계적 축적·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상승

추진내용

1. 추진 개요

- 「서울시의회 의정 정보화 로드맵」 실행 완수 : '18 ~ '20
- 의정활동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 실무 반영으로 IT기반 의정 정보화 완성

〈1단계〉 ('17~'18)	〈2단계〉 ('19)	〈3단계-1차〉 ('9)	〈3단계-2차〉 ('20)
▶ 의정 활동정보 집대성한 의정포털서비스(24종, 모바일) 실시 ▶ 맞춤형 정보제공	▶ 의원요구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 집행부 접수, 부서분배, 답변서 제출 통합 관리 ▶ 요구이력, 제출자료 공유	▶ 의안 발의 시 의안·정책·전문 자료·자문요청 및 회답 ▶ 검색, 통계	▶ 의안등록, 연서(공동발의/찬성), 발의, 접수, 보고 ▶ 의안 발의 진행 단계 조회 ▶ 입법조사, 비용추계 연계
의정포털시스템 (의정플러스+) 구축	의정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입법조사회답 시스템 구축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2. 세부추진내용

1단계 의정활동 핵심정보를 집대성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제공
- 모바일, PC 등 접속매체에 무관하게 최적화된 의정포털서비스 제공

- **추진기간** : '17.12. ~ '18. 6. (7개월)
- **운영현황** : 회원 474명(의원 110명, 직원 364명), '20년 월 평균 접속 6,590건
- **주요기능**

  - 의회역량강화 TF('17)에서 제시된 24종 핵심서비스 구축 및 연계
    - 의회 의정정보 DB(8종) 및 집행부 시스템(3종) 연계 활용
    - 의원재실, 연구용역, 공청회·토론회, 일정관리 등 정보 제공
  - 모바일, PC 등 접속매체에 무관하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모바일, 태블릿, PC 등 접속매체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 제공

- [MY PAGE] 구축을 통해 의원별 의정활동현황 실시간 제공
  - 요구자료, 의안발의, 회의 발언내용 등 11종의 의원별 맞춤정보 제공
  - 분산된 의정활동내역 통합 조회 및 의정자료 관리 편의 제고
- 통합검색 정확도 개선 및 검색 카테고리 확대로 숨겨진 의정정보 이용 활성화
  - 검색 카테고리 10종 → 17종으로 확대, 첨부파일 내용까지 검색
- 하나의 ID로 시의회 內 의정정보시스템(5종) 통합 로그인 체계 구현
  - 의정플러스+ ID/패스워드 하나로 각 의정시스템에 편리하게 접속

● 추진방법

-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정보화 TF」구성·운영
  - TF 단장(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정책TF(월1회), 실무TF(월2회) 운영
  -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능 설계 및 시스템 토대 마련
- 시스템 사용자(10대 의원, 사무처 직원) 교육 및 이용 활성화 촉진
  - 10대 의원(1회, 90명), 직원(3회, 218명) 교육 실시 및 요구사항 반영

● 서비스 구성도



2단계 의원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부터 제출 전과정을 전자화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절차의 간편화와 답변업무 편의성 극대화
- 의원간, 의원 – 집행부 간 자료 공유, 자료요구 이력 조회로 요구량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기간** : '18. 6. ~ 12. (6개월)

● **운영실적** : '20년 의원요구자료 8,153건, 행정사무감사자료 11,40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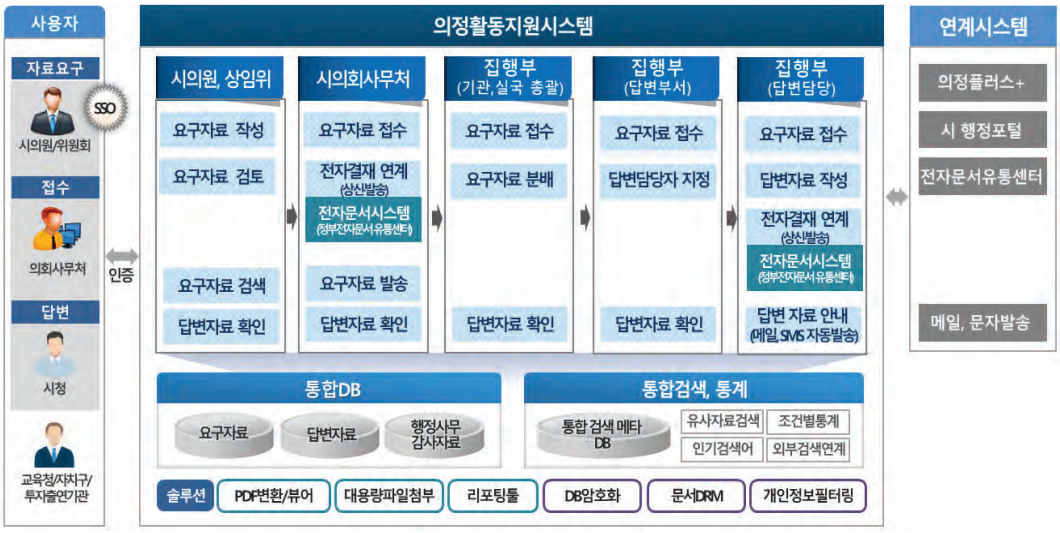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의원이 '의원요구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의 요구 및 답변자료를 PC와 모바일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확인
- 집행부 자료 제출 시 수기(공문, 메일) 방식 탈피, 요구·답변자료의 체계적 공유로 답변업무 편의성 증대
- 의원별 소속 지역구 및 소속 상임위 요구자료 조회, 관심자료 등록, 자료공유 기능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축적된 요구자료 요청·회답내용, 파일까지 통합검색하여 자료 활용 편의성 향상
- 의원·집행부(시청·교육청) 모두 기존 정보 검색하여 활용 극대화
- 의원간 제출 자료 공유로 집행부에 중복된 자료요구 최소화

● **전자화 전 ·후 비교**



● **구성도**



● 타 시도 의회와 혁신 사례 공유

- 경기도, 용인시, 부산진구 등에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기능 구성, 구축 절차 등 업무 노하우 제공

3단계 1차 의원 입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

> • 입법 발의 前 의안 작성과 입법정책, 전문정보, 법률자문 의뢰 및 회답 절차를 전자화하여 의원 입법활동 효율성을 극대화함.

● **추진기간** : '19. 6. ~ 12. (6개월)

● **운영실적** : 311건 ('20. 1.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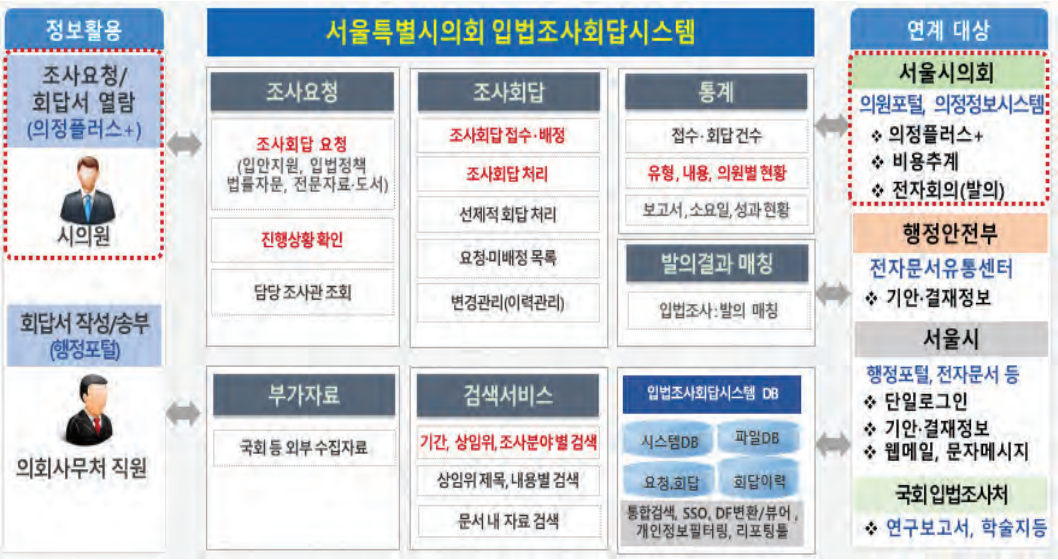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의원 발의 前 입법조사(의안·정책·전문자료·법률자문) 의뢰~회답절차 전산화로 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회답시간 단축, 조례 제·개정 내실화 도모
- 의원 입안 시 자료 요구 및 회답서, 입안자료 제공 편의성 획기적 개선
  - 모바일에서도 회답서 확인 가능
- 종이 문서 없는 온라인 입법활동의 출발점으로 관련 의정시스템과 정보 연동

(참고) 효용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TF 운영 및 다양한 의견수렴·반영) (~'19.11)

- 구성(14명) : 시의회 상임위원회, 입법담당관, 자문단(시의원 3명) 등
- 회의 실시 : 설계회의 18회, 자문회의 4회

● 구성도



3단계 2차 의원 입법 발의 절차를 전자화한 비대면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 의원 의정활동 중 핵심인 입법 절차를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신규 구축
- 의안 등록, 공동발의 연서, 찬성 연서, 의안 제출의 전자화로 의원간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도 발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추진기간** : '20. 5. ~ 12.(7개월) (추진 중)

● **주요기능**

-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안통합관리 전자화 추진
  - 의안 관련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입법조사, 비용추계, 전자회의, 의정플러스, 의회홈페이지 5개 시스템 연계)
  - 의안의 생성 및 처리 주체별 역할에 맞춰 업무처리 기능 및 화면 구현

- 의안등록, 접수 및 의결, 시민 공개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
- 발의절차 준수 여부, 발의진행단계 실시간 모니터링
  (입법조사, 비용추계, 연서, 상임위 회부, 심사, 본회의 상정, 의장보고, 의결 등)



의안처리시스템 연계 구성

- 비대면 전자연서(공동발의·찬성)를 위해 웹, 모바일 기반 서명처리
  - 서명의원(발의, 찬성자)의 서명 전자화로 의원실 방문 번거로움 해소
- 무방문 원클릭 의안 전자 발의
  - 의원, 상임위 직원이 의사담당관에 방문하여 인쇄본 의안(연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산화하여 방문 없이 원클릭으로 의안 제출
  - 의안 등록 시 표준 공문서식 제공, 발의 전 필수자료 누락여부(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동체크
- 의안 접수 시 내용 오류 및 접수 반려 최소화
- 의안 접수 전산대장 관리로 효율적인 의안 관리
  - 의안번호 자동부여, 의장 의안접수 보고서 생성으로 업무 소요시간 단축
  - 수기 의안 접수대장을 전산화하여 서고 보관하던 불편 해소

● 추진방법

-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와 구축 위해 「설계 TF」 구성·운영
  - 의회사무처 부서, 상임위 실무자 참여 TF구성(20명) 및 운영(27회)(1~8월)
  - 자문의원(5명) 자문회의 개최, 전체의원 의견조사 실시(8월)
- 의회 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의정정보의 효과적인 운영·관리 토대 마련

● 의안처리시스템 구성



기대효과

● **(의정포털시스템)** 의원 필요자료 맞춤 제공으로 의정활동에 편리하게 활용

●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의원이 언제 어디서나 답변자료 확인, 답변절차 표준화로 집행부 부서원간 제출 자료 공유 및 업무 생산성 제고

● **(입법조사회답시시템)** 의원 발의 前 입법조사 요청·회답업무 편의성 향상

● **(의안처리시스템)** 의원 발의 전과정 전자화로 정보공유 강화, 신속 발의 지원 및 비대면 의회운영 선제적 지원

참고 1 시스템별 주요 화면

1. 의정포털시스템(의정플러스) 주요 화면





2.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주요 화면





3. 입법조사회답시스템 주요 화면





참고 1 언론보도

연합뉴스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뉴스홈 | 최신기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실시간 시스템 구축

송고시간 | 2019-01-30 16:54



고현실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은 집행부(서울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시의원의 자료 요구와 집행부의 답변 처리를 전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007년 이후 11년간 축적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의회가 연간 요구하는 자료는 2만건에 달한다.

시스템 구축으로 시의원은 답변 자료를 실시간으로 PC와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자료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비슷한 자료는 집행부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이나 메일로 보내던 자료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신속한 자료 활용으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okko@yna.co.kr

NEWSIS

2019년 01월 30일 (수)
서울

서울시의회, 전국 지자체 최초 '의정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은 집행부(서울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이에 대

서울경제

증권 부동산 경제·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오피니언

사회 · 사회일반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지원시스템 도입

입력 2019-01-30 15:41:15 수정 2019.01.30 21:14:19 변재현 기자



의정활동지원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시의원 자료 요청·조회 과정./자료제공=서울시의회

매년 가을 행정감사 기간 동안 시의원들의 요구 자료가 넘쳐나지만 전산화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원활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의원은 모바일에서도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자료도 검색할 수 있게 돼 자료 중복 제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은 시청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돼 시청 공무원들도 그동안 공문 또는 메일을 통해 수기로 처리해 왔던 자료 요청 접수·배정·답변제출 전 과정을 보다 편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변재현기자

아시아경제 석간

2019년 01월 30일 (수)
종합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시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원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확인 가능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시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원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확인 가능[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 3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란 집행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처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2만여 건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2017년 실시한 서울시의원 설문조사에서 요구자료 시스템의 자동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의원은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라 '의원요구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및 답변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스마트해진 서울시의회... 전국 지자체 첫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2019-01-31 08:06

강승훈 기자

자료요구, 집행부 답변처리 전자적 지원

[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스마트해진다. 이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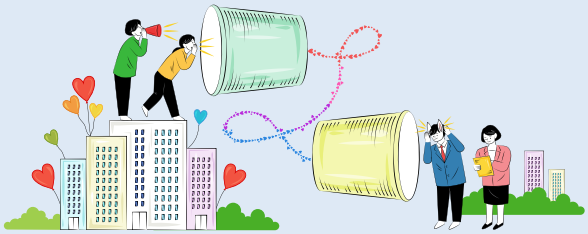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2만건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었다. 2017년 실시한 시의원 설문조사에서 요구자료 시스템의 자동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의원은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의 요구 및 답변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요구와 답변이 모두 자동화됨에 따라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05

『정책소통 페스티벌』 상설화



분　야 지방의회 혁신 분야

기관명 인천광역시의회

추진배경

●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이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등록·구성하여 연구활동하고 있음.

| 2020년 14개 의원연구단체 등록 |

- 시의원 37명 中 33명 2개 단체, 4명 1개 단체 활동
-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2020년은 '최초'로 전체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

● 의원들의 정책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붐 조성의 일환으로, '연구하는 의회, 정책 톡.톡. (talk. talk.)' 『정책소통 페스티벌』 추진 필요성 제기

※ 1회 2019년 개최되고, 2회 2020년에 개최하여, 인천시의회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로 상설화됨.

●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활용·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만의 행사가 아닌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과 입법기관인 인천시의회의 협력체제로 틀을 확대**함. 인천연구원의 입장에서도 시의회와의 협업으로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

※ 2019년, 2020년 페스티벌 2일에 걸쳐 진행됨.- 1일차 [인천연구원]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 2일차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

현황 및 문제점

● 의정활동 역량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수 매년 증가

- 202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 70,000천원(단체당 500만원)

※ 제8대 의회가 개원한 2018년 7월부터 연구단체 활동 활발히 추진됨

※ 2013 ~ 2020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현황(단체 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구단체(개)	5	1	1	1	4	3	9	14

● 인천시의회 제8대 의회 의원들은 형식적인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아닌 시정에 대해 조찬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의원연구단체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정분야별 시 집행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가고 있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실내 50인이하로 소규모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작년과 다르게 더 많은 시민과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와 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을 **병행** 실시

추진경과 및 내용

● **제1회 정책 페스티벌 : 2019년 10월 28일 ~ 29일**

- 양일간 시의회에서 13개의 토론회가 펼쳐짐
- 인천시의회-**인천연구원** 공동기획 정책소통 토론회 개최(2019.10.28.)

구분	시 간		내 용
사전행사	19.10.28(월) 10:00~10:20	20 ′	개회식
1일차	10:30~12:00	90 ′	**섹션 Ⅰ. 기획행정 분야**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
			섹션 Ⅱ. 문화복지 분야 관광정책 변화와 미래과제
	16:30~18:00	90 ′	**섹션 Ⅲ. 산업경제 분야**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대비 인천시 단계별 추진과제
			섹션Ⅳ. 건설교통 분야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 남청라 I·C구간 교통개선방안
			섹션Ⅴ. 교육 분야 교육분야 현안 점검 및 정책제언

- **의원연구단체 주관**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2019.10.29.)

구분	시 간		내 용
2일차	09:00~10:30	90 ′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연구
	09:30~11:30	120 ′	공항경제권 정책연구
	10:00~11:30	90 ′	인천광역시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문화적응 경험연구
	10:30~12:00	90 ′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
	12:00~13:30	90 ′	정책개발연구(리셉션)
	13:30~15:00	90 ′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 개발연구
	14:00~16:00	120 ′	서울시 환경기반시설 운영현황 및 과제
	15:00~16:30	90 ′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

●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 2020년 10월 27일 ~ 28일**

- 양일간 시의회에서는 20개의 토론회가 펼쳐짐

- 인천시의회-인천연구원 공동기획 정책소통 토론회 개최(2020.10.27.)

구분	분 야 (시간)	토 론 주 제
사전행사	10월 27일(화) 10:00~10:20	개회식
1일차	산업경제 (10:30~12:00)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 정책방향(최태림)
	문화복지 (14:00~15:30)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정책방향(정혜은)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조혜정)
	교 육 (14:00~15:30)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분야 정책방향(배은주)
	기획행정 (16:00~17:30)	-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이왕기)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이미애)
	건설교통 (16:00~17:30)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 정책방향(기윤환) -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안내영)

※ 인터넷 생중계(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유투브) 실시

-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관** 연구성과 토론회(2020.10.28.)

구분	장소 및 시간	의원단체명 (대표의원)	토 론 주 제
2일차	의회 본관 중앙홀 1층 (12:00~13:30)	정책개발연구(리셉션)	
	기획위 세미나실 (10/27 14:00 ~ 15:30)	인천시의회 환경기반시설 연구회 (강원모 의원)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 우수사례 발표
	기획위 회의실 (10:00 ~ 11:30)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 적정화 방안
	기획위 회의실 (14:00 ~ 15:30)	도시외교연구회 (손민호 의원)	인천도시외교 도약을 위한 점검과 제언
	기획위 세미나실 (14:00 ~ 15:30)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조광휘 의원)	공항경제권과 관광활성화 전략 방안
	기획위 세미나실 (16:00 ~ 17:30)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연구회 (남궁형 의원)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분야 등 지역문제 해결 방안 마련
	문복위 회의실 (10:00 ~ 11:30)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회 (김성준 의원)	자치분권과 자치복지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
	문복위 세미나실 (10:00 ~ 11:30)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김준식 의원)	인천광역시 다문화정책의 방향
	문복위 회의실 (14:00 ~ 15:30)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 (이병래 의원)	지역경제선순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문복위 세미나실 (14:00 ~ 15:30)	성인지 예산 활성화 연구회 (조선희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을 기초로 한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문복위 회의실 (16:00 ~ 17:30)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회 (전재운 의원)	인천광역시 생활체육동호회 운영과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위 세미나실 (10:00 ~ 11:30)	인천섬 생태 및 지질연구회 (김병기 의원)	인천섬(장봉도) 생태 및 지질연구를 통한 관광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산업위 세미나실 (16:00 ~ 17:30)	인천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안병배 의원)	내항재개발의 올바른 방향
	건교위 세미나실 (10:00 ~ 11:30)	도시재생 속 문화 인천연구회 (유세움 의원)	인천형 문화적 도시재생 미래
	건교위 세미나실 (16:00 ~ 17:30)	인천형 도시재생 연구회 (고존수 의원)	시민을 품는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 연구
	교육위 회의실 (10:00 ~ 11:30)	인천광역시의회 교육균형발전 연구회 (서정호 의원)	4차산업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모델 제시

※ 인터넷 생중계 실시(개최장소 회의실에 한함)

추진성과

● **1년간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인천연구원의 연구성과 결과물을 공유**

● 시정관련 **전방위적 시 집행부,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의회가 소통 및 정책조정의 창구 역할**

● 2020년 달라지거나 개선된 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실내50인 이하 규모로 행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투브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을 병행**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페스티벌 행사가 매년 **상설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식안건으로 논의하여 페스티벌 행사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함. (회의횟수 3회)
  - 의장단 및 상임의장단 회의(2020.8.24./2020.9.7.) : 페스티벌 1일차 관련, 인천연구원의 연구과제 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정책방향'을 각 상임위별 공통주제 설정**
  - 의원 총회(2020.9.15.)
- 각양각색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맞춰 **중창단 결성**. 페스티벌 2일차 리셉션 오프닝 무대이자 데뷔무대를 갖고,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냄.

● 의원들의 다양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자, **제266회 임시회(2020.10.)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음. 개정내용은 **의원이 가입가능 연구단체 수를 2개 → 3개로 확대**하였음.

| 중창단 소개 |

- 이 름 : 시시한 중창단(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한마음 중창단)
- 구 성 : 인천시의회 의원 8명
- 곡명 : 보리밭
- 특 징 : 결성 초기 데뷔무대여서 유일한 합창곡인 '보리밭'외에는 앵콜에 화답하지 못한 중창단이지만, 연미복도 자비로 맞춰 입는 열정을 갖춰, 이번 오프닝 데뷔무대는 성공적.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2020.12.17.) 오프닝 무대에도 선보일 가능성 있음.





-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시 집행부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정책실현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양적 질적 성장으로 인한 연구성과물 폭발을 정책소통 페스티벌이라는 틀을 만들어 그 안에 담았음.
- 실효적인 입법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상생·협력의 파트너쉽 강화됨.

향후계획

- 내년 상반기에 의원연구단체들별 흩어져 잡는 토론회 일정에 대해 한주간을 설정하여, **의원연구단체 토론주간**으로 운영방식 추가할 예정

첨부 1 행사사진 및 웹자보

■ 행사사진



개회식(1일차-의장님 인사말씀)



개회식(1일차-단체사진)



리셉션(2일차-운영위원장 사회)



리셉션(2일차-오프닝무대 '시시한 중창단')

■ 웹자보





첨부 2 보도자료

기호일보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003면 종합

인천시의회 '성과 공유 축제' 막 오른다

오늘부터 이틀간 시민과 정책소통
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이해 등
인천연구원·의원연구단체 토론



인천시의회 직원들이 26일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개최식이 열리는 시의회 중앙홀에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이틀 동안 시민들과 정책 소통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시의회 의원연구단체(14개)와 인천연구원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제는 '연구하는 의회, 정책 톡톡(talk talk)'이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 인천연구원 주관 정책소통 토론회를, 28일에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이 주관한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시의회 본관 중앙홀과 상임위원회별 회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50인 미만 관계자만 참석하고, 시의회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생방송된다.

인천연구원 성과 토론회는 기획·산업 등 각 분야별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내용을 집중 분석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이원기) ▶재정 분야 정책방향(이미애) ▶일자리정책 방향(최태림)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정혜은) ▶문화여가 분야 정책 방향(조해정) ▶계층별 주거정책 방향(기윤환) ▶도시계획 분야 정책 방향(안내영) 등이다.

의원연구단체 성과 토론회는 그동안 14개 분야로 활동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토론회는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연구회(남궁영 의원)=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분야 등 지역분제 해결 방안 마련 ▶도시외교연구회(손민호 의원)=인천도시외교 도약을 위한 점검과 제언 ▶환경기반시설 연구회(강원모 의원)=인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 적정화 방안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조광휘 의원)=공항경제권과 관광활성화 전략 방안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회(김성준 의원)=지지분권과 지지복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회(전재은 의원)=인천시 생활체육동호회 운영과 경제적 파급 효과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김준식 의원)=인천시 다문화 정책의 방향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이병래 의원)=지역경제선순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청인지 예산 활성화 연구회(조선의 의원)=인천시·교육청 청 인지 예·결산서 분석을 기초로 한 청인지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태·지질, 도시재생 분야 토론회는 ▶인천청 생태 및 지질연구회(김병기 의원)=인천심(장봉도) 생태 및 지질 연구를 통한 관광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인천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인병배 의원)=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방향 ▶인천형 도시재생 연구회(고존수 의원)=시민을 품는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 연구 ▶도시재생 속 문화 인천연구회(유세윤 의원)=인천형 문화적 도시재생 미래 ▶교육균형발전 연구회(서정호 의원)=4차 산업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모델 제시 등이 열린다.

신은호 의장은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며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될 인천시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청호 기자 yeh23@

인천일보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003면 종합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과물 자랑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에 참석한 신은호 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일보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004면 종합

의원연구단체 1년 성과를 돌아보다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14개 연구단체 주관 토론회



인천시의회가 지난 27일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를 토론하는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개회식을 열고 있다. /시의회 제공

8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1년 여간의 성과를 엿볼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생활폐기물, 공항경제권, 지역경제 선순환 등 인천 지역 현안을 다룬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28일 각 상임위 세미나실에서 '제2회 정책소통페스티벌'을 열고 14개 연구단체별 주관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선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이 이끄는 시의회 환경기반시설 연구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 우수사례를 살펴본 데 이어 이날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가격 적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한 인천환경연구원 대표는 "인천 청라, 송도 소각시설 운영 적자만 해도 최근 5년간 연평균 29억4740만원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도 연평균 45억3120만원이 발생했다"며 "광역 단위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사업소별 적자 요인 발굴에 나서면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폐기물 반입 할당제를 시행하고 반입협력금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의원으로 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있는 시의회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이날 '공항경제권과 관광 활성화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공항경제권 발전 방향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하현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과 피지는 팬데믹 시대에서는 사람보다는 항공, 해상 등 물류 이동·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항공물류 지향형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청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항과 수도권의 연결교통망을 확충해 배후지역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정책소통페스티벌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토론회와 함께 인천연구원의 연구성과 토론회 개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인천연구원이 '인천 인구구조 변화'를 토대로 재정·일자리·보건복지·문화여가·교육·도시계획 분야별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은희 기자 hanu@incheonilbo.com

경기일보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103면 인천

의회 인천시의회 '의정 24시'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의회 중앙홀에서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장용준기자

'정책소통 페스티벌' 14개 연구단체 성과 공유

환경·경제·복지분야 현안 해법 모색

인천시의회가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열고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성과를 시민과 공유했다.

시의회는 28일 시의원들이 모인 14개 연구단체의 다양한 정책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토론했다. 발표한 정책은 연구단체들이 올 한해 조찬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다.

이번 정책소통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 50명 미만으로 축소해 열렸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했다.

'환경기반시설 연구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각각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설 우수사례 발표와 인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 적정화 방안을 토론했다.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는 공항경제권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회'는 자치분권과 자치복지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를 했다. 이 밖에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올해 처음 한 11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과정과 결과도 공유했다.

앞서 지난 27일엔 인천연구원과 공동 기획해 인천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시의회, 시민과 공유했다. 시의회는 이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했다. 기획행정 분야는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 및 재정분야 정책방향을, 산업경제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 정책방향을, 문화복지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및 문화여가 분야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또 건설교통 분야는 계층별 주거 정책방향과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을, 교육 분야에선 교육분야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신은호 시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는 문화가 의원들 사이에 정착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 시민의 삶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심갖고 전반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시민일보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004면 의회&공무원

오늘까지 정책소통 페스티벌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27~28일 양일간 인천연구원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에도 지난해(9개) 보다 5개나 더 많은 14개 단체가 구성돼, 정책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이번 정책소통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특히 2일차인 28일에는 시의원으로 구성된 14개 연구단체가 올한해 단체별로 조찬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정책과 연구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토론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기호일보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004면 종합

인천시의원 환상의 하모니 뽐낸다

'시시한 중창단' 본격 활동 나서
내일 '누구나 인천중창제' 출연

인천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시한 중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로 시민들 앞에 선다.

29일 시시한 중창단에 따르면 중창단은 '시의원들의 시민들을 위한 한마음'이라는 뜻을 담아 지난 6월 창단했다. 이용선·조광휘·이병래·노태손·손민호·남궁형·김성준·김성수 등 총 8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며 방송인 장용 씨가 단장을 맡고 있다. <사진>



창단 이후 쏟아진 공연 섭외를 거절하고 매주 실력을 갈고 닦아 온 중창단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난 28일 시의회 정책세미나 축하공연으로 몸풀기를 하고 이날 인천적십자사 작은 음악회 초청공연을 거쳐 31일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0 누구나 인천중창제'에 특별출연한다.

중창단이 본격적인 데뷔 무대로 정한 이번 중창제는 전문적인 음악 콩쿠르가 아닌 순수 아마추어들이 음악을 즐기는 대회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인천 3개 팀과 경기 5개 팀, 서울 2개 팀 등 10개 팀이 결선에서 불꽃 튀는 경연을 펼치는 가운데 중창단도 율동과 열창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중창단이 무대에서 선보일 곡은 '보리밭'과 트로트 '이별의 인천항'이다. 시의원들은 이번 무대를 꾸미기 위해 이연성 성악가에게 꾸준히 노래 지도를 받았고, 사비로 무대의상을 맞추는 등 열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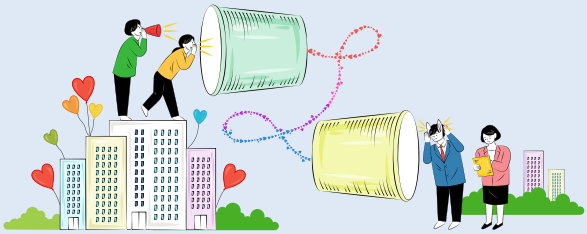
장용 단장은 "시시한중창단은 시민에게 친숙하고 위로가 되는 시의원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시의원 중창단"이라며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벌써 연말 출연 요청 쇄도에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창단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다'는 창단 취지에 맞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06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분 야 지방의회 혁신 분야

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 구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 일제 정비
- 성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서별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연구모임을 통한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함양 및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020년 4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20차 회의

  - 효과적인 조례 정비를 위한 방법 관련 전문가 교육실시, 성북구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위원회 검토, 부서별 의견 수렴, 7건의 일괄조례안 상정 및 위원회 개선방안 제시

현황 및 문제점

- **성북구 자치법규 현황** (2020. 10. 30.)

조례	규칙	훈령/예규	계
305	96	38	439

● **자치법규의 문제점**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례 다수 발견

- 제명 띄어쓰기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 제1조(목적) 약칭 사용,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한 「꺽쇠」 미사용 및 만연체 문장 다수
- 성북구 자치법규 개정 사항 미반영
- 정확한 명칭 미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센터 등
-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 띄어쓰기, 단순 오타 및 표기 실수 등

● **성북구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현황** (2020. 07. 31.)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연구모임 자료제출	연구모임 자체파악	위원회 미구성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124	119	202	50	28

●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 : 202건 중 80여 건 보고 누락

- 연구모임에서 자치법규 분석을 통해 파악한 위원회 202건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따른 위원회 보고 건수 124건
  - 연구모임 자료요구에 따른 위원회 보고 건수 119건

※ 연구모임에서 자치법규 전체를 검토하여 누락된 80여개의 위원회를 찾아냄

- 위원회 미구성 50건,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28건
- 반복된 제출 자료 부실
- 부서별 위원회 관리 미흡
- 목적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없는 위원회 다수 존재

개선내용

● 연구모임 추진 개최

- 자치법규 입안원칙 교육, 분석, 조례 개정안 작성·확정 등을 위한 20차례의 모임 개최(참고 1)

● 조례 일괄개정안 제출 : 7건(참고 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 조례」 외 36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8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 등에관한조례」 외 54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외 22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외 66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48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 외 46건

● 규칙·훈령(규정) 등에 대한 개정 촉구

- 구청장 권한인 규칙·훈령(규정) 등 자치법규의 제명, 상위법령 미반영, 명칭, 조례인용, 일본식 표현, 띄어쓰기 등은 더욱 심각. 성북구 규칙 96건 중 21건, 규정 38건 중 7건의 제명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개선점이 많음. 이에 구청장에게 조례와 같이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 조례·규칙·훈령(규정) 폐지 건의

-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 「서울특별시 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외 5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구정위원회 운영 규정」 외 6건 의 자치법규 폐지 검토 건의

개선성과

- 조례개정 : 123건 (2020년 11월 정례회 상정)
- 부서별 위원회 재정비 및 관련 조례 및 자치법규 개정

향후계획

- 2021년 2차 바른 조례 연구모임을 재결성하여, 2차 일괄 조례 개정 및 각종 위원회의 실제 운영현황 (기능, 목적, 구성, 회의실적 등)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할 예정

참고 1 바른조례 연구모임 활동내용

회차	날짜	활동명	활동내용
1차	04. 29	연구모임 활동 계획 작성	연구계획, 역할분담, 자료요구
2차	05. 06	인터넷 활용 방법 숙지	국가법령정보, 구법무행정, 핸드폰
3차	05. 14	자치법규 입안원칙 교육1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차	05. 15	자치법규 입안원칙 교육2	//
5차	05. 21	조례(위원회)검토 방법 교육1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6차	05. 28	조례(위원회)검토 방법 교육2	//
7차	07. 16	행감 및 구청 자료 분석	120여개의 위원회 검토
8차	07. 08	자치법규 속 위원회 분석1	목적, 기능, 구성, 임기 등
9차	07. 22	자치법규 속 위원회 분석2	//
10차	07. 23	자치법규 속 위원회 분석3	200건의 위원회 2차 자료 요구
11차	08. 10	2차자료:국별 위원회 분석1	담당관, 복지문화국, 건설교통국
12차	08. 11	2차자료:국별 위원회 분석2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13차	08. 12	2차자료:국별 위원회 분석3	행정국, 보건소
14차	08. 18	조례 개정 검토1	담당관, 복지문화국, 건설교통국
15차	08. 19	조례 개정 검토2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16차	08. 24	조례 개정 검토3	행정국, 보건소
17차	09. 22	조례 개정안 작성1	제명, 상위법령, 목적
18차	09. 23	조례 개정안 작성2	조례인용, 명칭, 위원회, 띄어쓰기
19차	10. 21	조례 일괄개정안 확정1	7개 분야로 나눠 123건
20차	10. 22	조례 일괄개정안 확정2	11월 정례회에 상정 예정

참고 2 조례 개정 리스트

번호	조 례	제명	상위 법령	목적	조례 인용	명칭	위원회	띄어 쓰기
1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		○		○	○	○
2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		○		○	○	○
3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	○	○	
4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	○	○	
5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
6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8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9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10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11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	○
12	성북구 공인조례		○	○		○		○
13	성북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14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	○	
15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			○	○
16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17	서울특별시성북구민의날조례	○		○		○		
18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19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20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		○			○	○
21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22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23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4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5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6	성북구 도시계획조례			○	○		○	
27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8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	○	
29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번호	조 례	제명	상위 법령	목적	조례 인용	명칭	위원회	띄어 쓰기
30	서울특별시성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		○		○	○	○
31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2	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	○		○			○	○
33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4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5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	○			○		
36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
37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38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39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				○	○
40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41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		○				○
42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	○	
43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		
44	성북구 생활폐기물수집 · 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						○	
45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	
46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7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			○	○	
48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49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	○			○	○	○
50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	
51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	○
52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53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54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55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	○
56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7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	○
58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9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			○		○
60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61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번호	조 례	제명	상위 법령	목적	조례 인용	명칭	위원회	띄어 쓰기
62	성북구 온실가스감축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63	성북구 웰다잉(Weii-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		
64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
65	서울특별시성북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	○	○		
66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	○	○	○	○
67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공인조례	○		○		○		
68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	○	○		
69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70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			○	
71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		○	○	
72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73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			○	○	○		○
74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75	성북구 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	○		
76	성북구 의회 표창 조례	○		○		○	○	
77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
78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		○		
79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			○	○		
80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조례	○	○				○	
81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82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			○
83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84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법		○					
85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86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87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
88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				○		
89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		○		
90	성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9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	○				○	○	○
92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93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	폐지						

번호	조 례	제명	상위 법령	목적	조례 인용	명칭	위원회	띄어 쓰기
94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		○	○	
95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96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						
97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	○	
98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					
99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	○				
100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
101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						
102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03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104	성북구청소년통행금지 ·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			○		○
105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106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	○	○		○	○	
107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108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109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110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		
111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		○		○
112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113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		○		
114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	○			○		
115	성북구 포상조례	○		○		○	○	○
116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
117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18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			
119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		○			○		
120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문 인용					○		
121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			
122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				○		○
123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
소계	총 123개 조례(폐지3)	37	39	55	23	67	48	47



편집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이용일 044.205.3371
지방의회운영팀장 박진혜 044.205.3373
지방의회운영담당 이영민 044.205.3375

발행처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디자인/인쇄

제일기획 (서울) 02.2269.8900 (세종) 044.866.2181